

국·내·입·법·의·견·조·사

제 10 호

상품권의 법적 규제

1993. 8.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과 향후 예측가능한 입법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과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과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일반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집·검토하는 것은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도 직결됩니다. 보다 완전한 입법의견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번호 (02) 722-0162 · 5

연구책임자

선임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 김창규

목 차

제 1 편 상품권의 법적 규제

I. 문제의 소재	5
II. 상품권규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	7
1. 쟁점사항별 입법의견	7
1) 상품권발행의 허용여부	7
2) 최고권면금액 및 잔액환불범위	10
3) 유효기간 및 채권소멸시효	13
4) 소비자보호조치	14
5) 기 타	15
2. 각계 의견의 정리 및 평가	18
III. 선급카드관련 입법의견	22
IV. 현행법, 개정안 및 외국의 입법례	28
1. 현행법	28
2. 개정안	29
3. 외국의 입법례 - 일본의 경우	31
V. 입법방향	39
부록 : 상품권법 개정안 신·구 대비표	41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65
1. 최근입법의견 목록	66
2. 최근입법의견요지	69
II. 최신법령 목록	102

제 1 편

상품권의 법적 규제

I. 문제의 소재

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인이 증권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공중에 대하여 매출하는 무기명 증권으로서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시·교부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차용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¹⁾. 즉, 상품권은 상인이 이용하는 사적인 금전대용증권으로서, 그 상인이 경영하는 시설 등에서 물품을 인도받거나 그 상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채권을 표창하는 일람출급의 무기명 유가증권이다.²⁾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인도받을 물품 또는 제공받을 용역의 금액을 표시하는 '금액표시상품권', 인도받을 물품의 종류를 표시하는 '물품표시상품권' 및 제공받을 용역의 종류를 표시하는 '용역표시상품권'으로, 또 발행주체에 따라 '자기발행형 상품권'과 '제3자발행형 상품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권은 현재 할부전표·인환권·교환권·보관증·물품인도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상당수량이 제화업체·의류업체·백화점·식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발행·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이 도서상품권과 Expo카드를 제외하고는 발행의 절대적 요건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등록절차를 결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1975년 이래로 과소비 조장·뇌물공여의 합법화·물가상승·통화팽창 등을 이유로 행정지침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정부는 상품권법상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등록을 받아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아니한 상품권을 발행·유통시키는 상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아

1) 1993.7.16 관보에 입법예고된 「상품권법 개정안」 제2조(정의) 및 일본 「전불식증표의 규제등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

2)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1990.8, 46면; 최기원, 어음·수표법, 박영사, 1987, 27면.

올려 세무조사를 단행하여 왔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정부의 규제조치는 행정재량의 남용인 동시에 국가가 행정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법치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며, 행위규범인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위축시키는 처사였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상품권이 음성적으로 발행·유통되어 왔는데³⁾, 이는 상품권에 의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설사 상품권법을 위반하여 고발조치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체형을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상의 약점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품권의 음성적 발행은 소비자보호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고, 세금포탈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상품권의 할인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여타의 상품권은 발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에 반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선물풍토의 문화화 등을 이유로 도서상품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국제적인 행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람객 등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Expo카드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유통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 상거래의 촉진, 경제민주화,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이유로 금년 7월 16일 「상품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월 27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여 내년부터 상품권의 발행·유통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 한다.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허용방침을 전제로 하여, 상품권법 개정안에 담겨져야 할 내용에 대한 각계의 입법의견을 쟁점사항별로 그 내용을 알아본 후 이를 정리·평가함과 아울러 현행법·개정안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입법방향에 대한 약간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또한 상품권 발행·유통의 전면허용과 더불어 그 이용도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권의 하나의 유형인 선급카드에

3) 불법상품권은 주로 제화업계와 의류업계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제화업계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약 70%가 불법상품권에 의한 것이라 한다. 동아, 1990.9.30, 14면; 한겨레, 1990.11.3, 4면; 경향, 1992.7.20, 3, 23면 등 참조.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여타 상품권과의 공통점·차이점 및 그 차이점으로 인한 법적 취급상의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상품권규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

1. 쟁점사항별 입법의견

상품권법 개정안에 담겨져야 할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별 입법의견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간에 제기되어 온 상품권발행의 허용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먼저 검토한다. 허용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은 상품권법 개정에 담겨져야 할 개별 사항들 뿐만 아니라 규제의 정도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권법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인 최고권면금액, 잔액환불범위, 유효기간, 채권소멸시효, 소비자보호조치 기타 공탁 등 상환보장제도·발행자의 제한 등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살펴본다.

1) 상품권발행의 허용여부

(1) 찬 성

○상공부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현재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을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겨레, 1993.2.13, 7면).

○유통업계

① 과소비와 뇌물성 선물의 근절 차원에서 지난 '75년부터 금지되고 있는 상품권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서적류에 대해서는 상품권의 발행을 공식화하면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조치이므로 상품권을 완전히 부활시켜야 한다. 제2의 화폐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소비자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품권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들에게는 여러가지 편리함을 주게 될 것이다(한국, 1990.5.7, 6면).

② 상품권이 양성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쇼핑의 편의제공, 세수증대, 교통난 해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지금 상품권이 유독 물가불안과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정부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동아, 1990.9.30, 14면).

③ 유명상표를 갖고 있는 일부 제화업체들은 연간 총매출액의 거의 절반을 상품권발행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상품권발행이 유통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이유 이외에도 상품권의 양성화가 소비자들의 편의제공, 교통난 해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한겨레, 1990.11.3, 4면).

○ 백화점업계

무기명유가증권인 상품권은 ①소비자의 편리성 제고, ②유통산업의 경영활동 효율성증대, ③명절 등 성수기때 물동량분산에 따른 교통난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 소비자보호제도의 보완과 상품권발행조건의 강화를 통하여 이를 부활하여야 한다. 특히 선물문화의 정착으로 회사창립일이나 결혼식·회갑연·명절 등 선물 구매량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 상품권을 이용하면 소비자도 구매계획이 가능하게 되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세계, 1993.3.8, 17면).

○ 백화점협회

금년 7월부터 국내유통시장의 완전개방이 실시될 경우 자본력의 영세,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규모 외국유통자본에 의한 국내유통업지배가 크게 우려된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유통업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여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등에 전화카드, 지하철정액권 등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며 유사상품권의 통용으로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정에서 발행조건 강화 등의 법적 제도장치의 보완을 통하여 상품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백화점협회,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업계의견」, 1993.1).

○ 박정식(백화점협회)

상품권관련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행정명령 하나로 20여년간 발행을 규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신용사회에 발맞추고 유통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탁금설정 및 발행업소의 자격기준 강화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상품권의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다(세계, 1993.3, 17면).

○ 김문환(국민대 법학과 교수)

상품권 부활을 두고 업계 등에서 찬반론이 일고 있으나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민주화 추세로 볼 때 사적 계약의 결과인 상품권의 발행을 정부가 계속 묶어두기만 할 수도 없다. 상품권의 발행은 허용하되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막아 나가는 등 보완해야 할 것이다(동아, 1990.9.30, 14면).

(2) 반 대

○ 재무부

① 현시점에서 상품권발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과소비를 더욱 부추기게 되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심화시켜 상품권 유통에 대한 법규가 미비된 현실에서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현재의 고물가와 과소비현상이 해소되고 유통구조가 재정비된 후에나 상품권 부활을 검토해 볼 수도 있으나 지금은 시기상조이다(동아, 1990.9.30, 14면).

② 상품권 발행업체가 등록은 물론 공탁금을 걸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도산할 경우 상품권이 휴지로 변할 위험이 있다. 과소비현상이 해소되고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상품권부활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엄중한 단속이 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이다(한겨레, 1990.11.3, 4면).

③ 과소비 억제, 물가안정, 부조리 방지 등을 위하여 당분간 상품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산업이 개방되더라도 국내업체와 외국업체에 차별없이 상품권 발행을 금지할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한겨레, 1993.2.13, 7면).

○ 영세중소업체

① 상품권이 부활될 경우 상품권발행에 필요한 공탁금을 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영세한 자본으로는 광고와 진열대 설치 등이 불가능해 대형업체와의 경쟁은 생각할 수 없어 결사반대한다(동아, 1990.9.30, 14면).

② 상품권이 부활될 경우 상품권발행에 필요한 공탁금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라 유명업체들의 광고공세를 당할 수 없다(한겨레, 1990.11.3, 4면).

○ 소비자단체

① 과소비조장·뇌물수단으로의 활용 등 부작용과 잔액환불 거부·상품교환시기 제약·유효기간 시비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상품권의 부활은 불법유사상품권으로 인한 병폐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발행에 앞서 확실한 피해보상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동아, 1990.9.30, 14면).

② 상품권이 주로 뇌물수단으로 활용되는데다 잔액환불의 거부, 상품교환시기와 유효기간의 제약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클 것이다(한겨레, 1990.11.3, 4면).

○ 경향신문

제화업체들이 2만원내외의 제조원가에도 불구하고 구두의 고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바로 상품권 때문이다(경향, 1992. 7.20, 23면).

2) 최고권면금액 및 잔액환불범위

(1) 최고권면금액

① 업 계

○ 박중삼(현대백화점 이사)

물품표시와 금액표시 상품권의 권면금액제한에 차등을 둘 것파 물품표시에 보다 융통성을 부여할 것. 금액한도는 물품표시 상품권의 경우 1백만원 정도가 기준이 될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이범열(한국유통연구소 소장)

금액표시상품권의 경우 10만원, 물품·용역 표시상품권의 경우 20만원이 적절하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이재현(금강제화 이사)

상품권의 용도가 주로 선물이고 상한가가 가이드라인임을 감안할 때, 금액표시 상품권과 물품표시상품권 모두 10만원 이하가 적절하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최준권(삼성물산 마케팅실장)

물품표시상품권의 경우 신사복에 액세서리 등을 감안 최소 50만원선을 되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② 소비자단체

○ 김성숙(한국소비자연맹 사무처장)

금액표시는 10만원, 물품표시는 30만원선으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품표시 상품권에도 물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김조한(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무처장)

가격한도는 30만원이상은 곤란하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③ 학 계

○ 김문환(국민대 법학과 교수)

종전의 가격한도는 금액표시상품권이 2만원, 물품이나 용역표시상품권이 5만원이나 그 사이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인플레이도 커졌으므로 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금액표시상품권은 10~30만원, 물품표시상품권이나 용역표시상품권은 1~50만원 선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경우는 1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2) 잔액 환불 범위

① 재무부

금액표시상품권의 발행자 등은 동 상품권의 소유자가 권면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1993.7.16, 입법예고 「상품권법 개정안」, 제21조 2항 참조).

② 업 계

○ 박중삼(현대백화점 이사)

환불은 물품표시상품권의 경우 20%이내로 함이 좋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이범열(한국유통연구소 소장)

환불은 10%범위내가 적당하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이재실(금강제화 이사)

잔액환불은 액면금액의 10%이내가 적당하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

③ 소비자단체

○ 김연화(한국부인회 소비자실장)

잔액환불은 권면금액의 30%이하가 바람직하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김조한(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무처장)

차액환불은 30%는 되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한국소비자연맹

잔액환불의 범위는 권면금액의 30%까지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다. 소비자 고발 중 현재 5만원권 상품권으로 3만7천~3만8천원 정도의 물건을 구입하는 예가 많아, 환불금은 30%이상 확보되어야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한국소비자연맹, “상품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1993.7.30).

④ 학 계

○ 이수동(국민대학교 교수)

유통활성화와 예측가능한 경영을 위해 차액환불은 액면의 20%를 넘으면 안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3) 유효기간 및 채권소멸시효

(1) 유효기간

① 재무부

발행자가 최단기의 상품권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최저유효기간의 설정 하한선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할 방침이다(1993.7.15, 입법예고 「상품권법 개정안」, 제13조 참조).

② 업 계

○ 이재실(금강제화 이사)

상품권유효기간은 기업이 소지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한은 문제될 것이 없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최준권(삼성물산 마케팅실장)

상품권유효기간은 의류 등 패션상품은 계절성이 있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표시상품권과 물품표시상품권에 차등을 두어 물품표시상품권의 경우 상품의 성격에 따라 기한을 3개월부터로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③ 소비자단체

○ 김성숙(한국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상품권유효기간은 금액표시상품권의 경우 최소 3년은 되어야 하고 물품표시상품권은 어느정도 유통성(6개월~1년)을 두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김조한(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무처장)

유효기간은 1~3년은 두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④ 학 계

○ 김문환(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개정안에서는 금액표시·물품표시·용역표시 상품권의 구별없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과 같은 물품표시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단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발행일의 기재가 의무화되어야 유효기간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이수동(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저유효기간은 1년이 적당하다. 너무 축소하면 상품권을 못 쓸 수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2) 채권소멸시효

○ 재무부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이라 할 지라도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상당액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1993.7.16, 입법예고 「상품권법 개정안」, 제23조 참조).

○ 김성숙(한국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유효기간이후의 보상은 물품표시상품권은 6개월~1년은 되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4) 소비자보호조치

○ 재무부

상품권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번 상품권법 개정도 이 점에 주안을 두었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소비자연맹

상품권과 관련하여 그간 집계된 소비자불만사례를 보면, 구두상품권이 약 70%, 의류상품권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사례별로는 무조건적인 상품권의

상환거부가 41.0%, 잔액의 현금지급거부가 35.7%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폐업으로 인한 상품권 사용불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상품권의 상환거부, 할인판매시 상품권에 대한 할인적용 거부, 액면가 불표시, 사용처(구입처)의 제한 기타 현금고객과의 차별대우 등의 불만사례도 있었다(세계, 1993. 2. 6, 17면).

○ 김연화(한국부인회 소비자실장)

가격표시상품권에 대하여 백화점들이 세일때 받는 것을 거절하고, 물품표시상품권에 대하여는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교환을 거절하는 행위들을 막기 위해 일정액이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김문환(국민대 법학과 교수)

지난 7월 15일 입법예고된 재무부의 상품권법개정안에는 물품표시상품권에 대하여 차별화된 불량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차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상품권이 유가증권이기는 하나 이를 분실했을 경우 일반 유가증권상의 제권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여야 할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5) 기 타

(1) 공탁 등 상환보장제도

○ 재무부

비현실적인 공탁제도를 보험제도로 바꿀 계획이다. 현행 상품권법은 발행액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전에 공탁하고 분기별로 미상환액의 50%를 다시 공탁하도록 하고 있어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이나 대형유통기관 이외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체들은 상품권의 발행을 반대하여 왔다. 상품권법이 바뀌면 발행액 만큼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영세업자들도 상품권을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경향, 1990.3.12, 2면; 한겨레, 1990.3.13, 2면).

○ 김문환(국민대 법학과 교수)

공탁제는 개정시안처럼 발행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예컨대,

보증보험가입)으로 바꾸면 될 것이지만 보증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영세상인을 위하여 공탁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놔둘 필요가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2) 발행자의 제한

○ 김연화(한국부인회 소비자실장)

제3자발행은 발행 후 책임소재가 모호해져 공수표가 될 수 있으므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이수동(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3자발행제한은 상품권남발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강화하면 중소기업체에 피해가 올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체인화를 유도하여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김조한(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무처장)

제3자발행제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권이현(한국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자기발행형상품권은 발행자를 제조업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한국소비자연맹

제3자 발행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자기발행형에 비해 상품의 품질·서비스에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3자 발행의 경우 품질·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가제의 운영에 있어 운영기관, 업체수 선정에 제한적으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소비자연맹, “상품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1993.7.30)

(3) 단계적 실시

○ 이범열(한국유통연구소 소장)

상품권이 반발을 부를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총액관리가 바람직하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이기웅(한국출판협회 이사장)

처음 3~5년간은 품목별로 제3자발행상품권만 1~2사로 제한하여 전국 공통으로 발행케 하여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4) 기타 의견

○ 재무부 - 규제기관

상품권발행의 허가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여 무분별한 상품권의 발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상품권을 관장하면 유통업체들의 횡포를 줄일 수 있고, 상품권이 체자리를 잡으면 유통질서의 확립에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경향, 1990.3.12, 2면; 한겨레, 1990.3.13, 2면).

○ 공정거래위원회 - 상품권에 의한 하도급대금, 물품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대금은 법정어음이나 법률로 현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하도급거래법 위반이다. 물품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대체로 우월적 지위남용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피해사례를 당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명령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다(한국, 1991.9.21, 7면).

○ 검찰·경찰 - 상품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 미비

상품권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체형을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률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해마다 대규모로 유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동아, 1991.12.21, 15면).

○ 김문환(국민대 법학과 교수) - 상품권 양식 및 조세문제

① 상품권양식은 조폐공사에서 통일양식에 따라 인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정비율 이내의 잔액을 현금으로 환금케 되는 조건때문에 상품권을 한장으로 만들기 어려운데다 위조방지방안도 고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에 있어서 상품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상품권은 현금을 받고 발행한 후 상품권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져 어느 시점을 판매시점으로 볼 것인지 문제이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권이현(한국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 할인판매, 방문판매법과의 문제 등

① 유통질서를 흐리는 할인판매가 성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는 부당거래로 금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법도 상품권을 이용한 피라미트판매 등에 대비하여 보완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백화점협회 - 권면기재사항의 별도서식이용, 공탁기일·보고기간 등 연장,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① 상품권 권면 기재사항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기재가 불가능하다. 별지의 서식에 기재하여 상품권 판매시 상품권과 함께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기일, 보고기간 등이 너무 단기로 되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③ 상품권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 및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의 특별한 조정이 필요하다(백화점협회, “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 1993.7).

○ 한국소비자연맹 - 1회 발행한도 설정, 사용점포의 확대

① 추석·명절 등의 경우 급격한 유통량의 증가로 물건의 대비없이 상품권이 발행되어질 수 있으므로 1회당 발행한도 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업체에서 매점·매석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②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장소는 전국적으로 많이 확보되어 질수록 편리하다. 발행처 관할하에 가맹점·대리점 등에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소비자연맹, “상품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1993.7.30).

2. 각계 의견의 정리 및 평가

이상에서 상품권발행의 허용여부에 대한 종래의 논의와 함께 상품권법 개정안에 담겨져야 할 주요 쟁점사항으로 최고권면금액, 잔액환불범위, 유

효기간, 채권소멸시효, 소비자보호조치, 기타 공탁 등 상환보장제도·발행자의 제한 등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이들 의견을 정리·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경제적 순기능과 역기능

상품권발행의 허용여부에 대한 기존의 논의로부터 상품권의 경제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순기능

① 소비자측

- 현금의 휴대불요
- 결제의 신속화
- 기타 선물용 등

② 사업자측

- 선금금의 운용
- 고객의 고정화
- 기타 광고매체로서의 활용 등

(2) 경제적 역기능

- 과소비 조장
- 뇌물성 선물공여 합법화
- 물가상승 심화
- 통화팽창 가속화
- 중소기업체들의 상대적 위축

2) 쟁점사항별 정리 및 평가

(1) 최고권면금액 및 잔액환급범위

- ① 최고권면금액의 경우, 현행법상의 금액표시상품권 2만원, 물품·용역

표시상품권 5만원은 그간의 경제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인상하여야 한다는데는 일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업계, 소비자단체 및 학계는 물론이고 업계간에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주장하는 금액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현행법에서는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무부의 개정안에서도 역시 최고권면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품권법 개정안」 제14조 참조).

②잔액환급범위의 경우, 금액표시상품권으로 일정액의 물품을 구입한 후의 잔액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대체로 업계의 경우 10%, 소비자단체의 경우 30%를 요구하고 있다. 잔액환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재무부의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금액표시상품권 발행자 등의 잔액지급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잔액환불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상품권법 개정안」 제21조제2항 참조).

(2) 최소유효기간 및 채권소멸시효

①최소유효기간의 경우, 금액표시상품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1년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나, 물품·용역표시상품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상품의 성격에 따라 융통성있게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재무부의 개정안에서는 유효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채권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최소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상품권법 개정안」 제13조 참조).

②채권소멸시효의 경우, 금액표시상품권과 물품·용역표시상품권 공히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지라도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비율 상당액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물품·용역표시상품권에 대해서는 시효기간을 단축하여야 한

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상품권의 채권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재무부의 개정안에서는 일률적으로 채권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상품권법 개정안」 제23조 참조).

(3) 소비자보호조치

종래 상품권의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으로는 상품권의 상환거부, 잔액의 현금지급거부, 폐업으로 인한 상품권 사용불가, 유효기간경과로 인한 상품권의 상환거부, 할인판매시 상품권에 대한 할인적용 거부, 액면가 불표시, 사용처(구입처)의 제한, 현금고객과의 차별 등을 들 수 있다. 재무부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 대부분에 대한 예방적 조치 또는 위반에 따른 처벌을 예정해 놓고 있다. 다만, 할인판매시 상품권에 대한 할인적용 거부, 현금고객과의 차별 등에 있어 객관적으로 차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4) 기타 의견

이상의 쟁점사항들 이외에도 공탁 등 상품권의 상환보장제도의 보완, 발행자 특히 제3자발행의 제한, 상품권 발행허용의 단계적 실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변경, 상품권에 의한 하도급대금·물품대금의 지급방지책, 상품권법 위반의 근절을 위한 처벌의 강화, 공정거래차원에서의 할인판매 규제, 유통의 편리성 및 위조방지와 관련한 상품권의 양식문제, 부가가치세·법인세 문제, 방문판매법과의 상호보완문제, 권면기재사항의 별도서식 이용, 공탁기일·보고기간 등의 연장, 1회 발행한도 설정, 사용점포의 확대 등 상품권의 발행허용을 전제로 한 상품권법의 보완을 위한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Ⅲ. 선급카드관련 입법의견

1. 개 요

1) 선급카드의 의의

선급카드란⁴⁾, 예컨대 공중전화카드, 지하철정기승차권, Expo카드 처럼, 거스름돈의 수수를 수반하는 잔액현금결제가 반복·계속되는 업종에 있어서, 일정금액단위의 카드를 구입하면 이를 취급하는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대신 결제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선급카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이를 금권으로 보는 견해와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물품 또는 서비스의 급부청구권 또는 대금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가 현재 유력하다⁵⁾.

2) 선급카드의 특징

결제수단으로서의 선급카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선급성

선급카드는 물품·서비스의 급부에 대한 선급성의 증표이다. 선급카드에 의한 거래에서는 이용자(소비자)가 물품·서비스의 급부에 앞서 먼저 선급카드를 구입하고 물품·서비스의 급부시에 그러한 선급카드를 가지고 결제하게, 즉, 지급에 같음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금을 선급한다는 점이 결제수단으로서의 선급카드의 큰 특징이며, 신용카드도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서비스의 급부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유사한 결제수단이지

4) 영어로는 'prepaid card', 일어로는 '前拂式證票'라고 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실무상 선불카드, PP카드 또는 선지급카드라고 불리우고 있으나 '선급카드'라는 명칭이 보다 정확한 용어일 것이다.

5) 정동윤, 전게서, 636면; 片關義廣, "プリペイド・カドの法的性質と契約關係, ズユリスト No.951, 1990.3.1, 41頁.

만 대금지급이 후불인 점에서 다르다.

(2) 사용가치잔고의 가변성

선급카드는 사용가치잔고가 카드에 기록되고, 사용시 마다 사용한 가치 상당분이 감소되어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가격대의 물품·서비스의 지급에 대응할 수 있는 외에 사용가치가 없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하게 선급인 상품권과 차이가 있다.

(3) 무기명성

선급카드는 일반적으로는 무기명으로 사용자를 특정하여 두지 아니하며, 소지인이 유일하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무기명성으로 인하여 유통되기 쉬우며 선물용으로도 적당하다. 이러한 점은 종래의 상품권과 공통된 특징이며 본인확인을 요하는 신용카드와 다른 점의 하나이다. 다만 분실위험의 회피, 고객의 소비동향 파악 등의 목적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ID기능을 부여한 유통성이 희박한 선급카드도 발행될 수 있다.

(4) 휴대의 편리성

선급카드는 사용가치잔고의 범위내라면 몇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태와 중량에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다.

(5) 단기간의 확실한 결제처리 가능성

선급카드는 내장되어 있는 자기정보를 카드단말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결제되기 때문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비하여 단기간에 걸친 확실한 결제처리가 가능하다.

3) 다른 결제수단과의 비교

선급카드의 결제수단으로서의 특징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유사성을 가진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종이재료로 만든 상품권 등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와의 비교

신용카드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지급에 있어서 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급카드와 유사하지만, 선급카드가 이용자에 대하여 선급이라는데 대하여 신용카드회사의 신용공여에 의한 후급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또한 선급카드는 카드 자체에 사용가치가 내장되어 있고 이른바 물품 등의 구입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명식일 것을 요하지 않는데 대하여, 신용카드는 이용자가 신용카드회사의 신용공여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의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ID기능을 가지며 또 본인확인의 절차를 요하는 점이 다르다.

(2) 상품권과의 비교

상품권에 관하여는 무기명의 선급식 증표이고 증표(증권) 자체에 사용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급카드와 기본적으로 성격을 가이 하지만 사용가치잔고의 가변성이 없기 때문에 1회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선급카드와 다르다. 또한 선급카드와 같은 대금회수 업무상의 장점이나 휴대상의 장점이 부족한 것도 있으며 이용분야가 한정되어 있다.

4) 선급카드의 범용성·환금성⁶⁾

(1) 선급카드의 범용성

선급카드에 대해서는 개별카드의 범용성을 제고하여 편리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망이 있다. 한편 선급카드의 범용성이 높아진다면 통화에 가까운 성격을 갖게 되어 국가의 통화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화의 기능이란 어떤 곳에서 누구라도 누구에 대해서도 지급 내지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흠결된다면 통화유사증권으로는 취급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단일건물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카드, 암호번호 등에 의한 본인확인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특정되어 있는 카드, 단일의 카드로 가계의 소

6) 中原 宏, 前掲論文, 28頁 參照.

비활동 중 상당부분을 커버하더라도 범용성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카드 등은 통화유사증권이 아니다.

(2) 선급카드의 환금성

선급카드가 일반적으로 환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당해 선급카드가 본래의 이용목적에 이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금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환금을 인정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발행주체가 각각의 카드의 특질을 고려하여 약관 등에 합리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업계단체 등에서 카드의 유형별로 몇개의 모형을 작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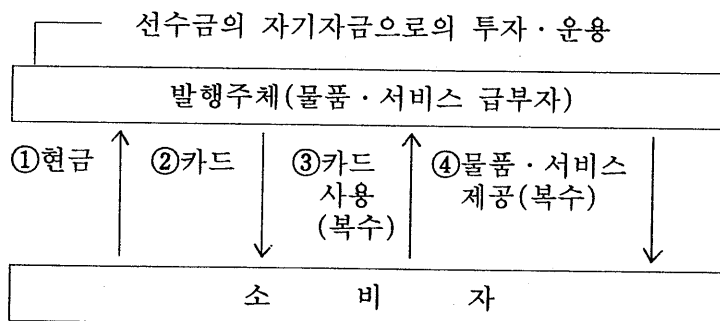
2. 선급카드의 발행형태 및 이용형태

1) 선급카드의 발행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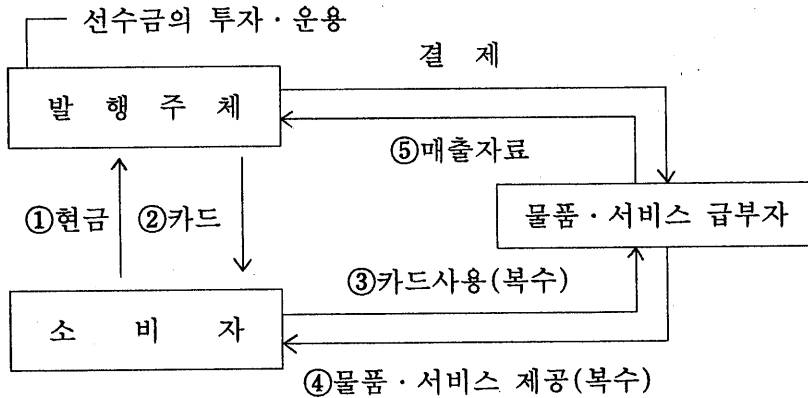
선급카드의 발행형태는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자기발행형과 제3자발행형이 있다. 제3자발행형에서는 이용자가 사전에 자금을 발행주체에게 맡겨두고 물품·서비스의 급부를 받는 시점에서 판매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발행주체에게 지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당좌예금에 의한 자금결제와 극히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 이점에서 제3자발행형 선급카드의 발행주체는 금융기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도> 선급카드의 발행형태

(1) 자기발행형



(2) 제3자발행형



2) 선급카드의 이용형태

선급카드는 대금회수업무를 합리화시킬 수 있고 선물용으로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액의 잔액현금 결제가 반복·계속되는 각종 분야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으며 판매촉진용이나 광고매체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3. 선급카드관련 입법의견

○ 재무부

①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법에, 상품권은 상품권법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라 당초 선불카드를 상품권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를 해왔으나, 상품권은 상품권대로 선불카드는 선불카드대로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매일경제신문, 1993.6.4., 22면).

②향후 선불카드의 발행을 허용하는 경우 과소비억제 차원에서 카드 1개당 최대액면금액이 2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국민, 1993.6.17., 6면, 조선, 1993. 6. 18., 10면).

○ 김문환(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부는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구분하여 상품권은 상품권법개정을 통해, 선불카

드는 신용카드업법개정을 통하여 이원적으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으나 제도발전의 통일화를 위해서는 이번 상품권법개정과 함께 일본처럼 '전불식증권규제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우산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 한국일보

선불카드의 보급으로 생길 부작용으로는 ①현재 불법으로 단속되고 있는상품권과의 형평문제, ②사용이 끝난 카드를 마구 버렸을 경우 발생하는 공해문제 등이 다. 환경공해를 막기 위해서는 ①고객이 회수해 올 경우 보상금 지급, ②가맹점의 회수 의무화, ③카드구입시 사용한 카드반환 의무화 등을 들 수 있다(한국, 1992. 12. 9., 22면).

○ 세계일보

선불카드는 공중전화카드처럼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되는데 카드당 최대사용금액은 과소비억제차원에서 5만~1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세계, 1993. 6. 18., 6면).

○ 한국일보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현재의 전화카드와 유사한 선불카드의 발행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부산의 시내버스 운송조합이 버스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버스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현재의 토큰이나 동전을 쓸 필요없이 버스를 탈 때 3천~2만원대의 정액의 선불카드를 카드정산기에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

버스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입금액의 명료화 등 회계상 커다란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다른 대도시의 시내버스들도 카드에 의한 버스요금 수납방식을 서둘러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철도요금이나 영화관 입장료 등도 선불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커피·음료·라면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판기들도 선불카드에 의한 판매를 병행하게 된다. 자판기에 선불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판기에 별도의 정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한국, 1993. 7. 13., 8면).

Ⅳ. 현행법, 개정안 및 외국의 입법례

1. 현행법

1) 헌법상의 경제조항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는 우선 헌법상의 경제조항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등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규제·조정권한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도 미친다는 것은 부연의 여지가 없다.

2) 상품권법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개별법률로는 ‘유가증권인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도모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제1조) 1961년에 제정되어, 1973년에 한차례 소폭으로 개정된 상품권법이 있다. 상품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 (1) 등록 및 공탁(제1조의 3 내지 제5조)
- (2) 권면기재사항 및 권면금액의 제한(제6조 내지 제8조)
- (3) 장부의 비치·제출의무 기타 보고의무(제9조 내지 제11조)
- (4) 우선변제권 및 상환의무(제12조 내지 제12조의 2)
- (5) 구제절차(제13조 내지 제16조)
- (6) 권한의 위임(제16조의 2)
- (7) 벌칙(제17조 내지 제20조)

7) 상품권법은 구법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상품권취체령」(1993년 제정)을 폐지하고 제정되었으며, 상품권법의 규제대상을 금액표시상품권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973년 개정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이 조사보고서 부록의 신·구대비표를 참조할 것.

3) 상품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품권법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현행법령으로 상품권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품권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이 있다. 시행령에서는 등록사항, 공탁금액(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30) 및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공탁신고서 기재사항, 권면금액의 최고한도(금액표시상품권 2만원·물품표시상품권과 용역표시상품권 5만원) 및 상품권발행상황월말보고서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개정안⁸⁾

1) 개정취지

1993.3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75.12 이후 발행금지되어 온 상품권의 발행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 동안의 상품권 발행금지조치로 인하여 '73.2 개정 이후 상품권 발행금지기간중 정비·보완이 곤란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상품권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함으로써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상품권 발행·유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상품권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권적 성격을 지니는 증표 등을 명문화 함으로써 상품권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최소화 함(개정안 제3조).

(2) 상품권법의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함.

8) 재무부, "상품권법 개정안",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① 상품권발행등록 및 상환보장 의무화 대상 상품권을 현재의 금액표시 상품권 이외에 물품표시 상품권 및 용역표시 상품권까지 확대함(개정안 제5조, 제8조 제5항, 제17조).

② 발행자가 초단기의 상품권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최저 유효기간의 설정하한선을 발행일로 부터 1년으로 함(개정안 제13조).

③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한 후 차액의 환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발행자는 차액을 환불하여야 함(개정안 제21조 제2항).

④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이라 할지라도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감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상당액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23조).

⑤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보장토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의 공탁제도 이외에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 또는 보증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리실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28조).

(3) 상품권 발행자와 물품(용역)의 공급자가 다른 제3자형 발행자의 경우 금융업 유사업무를 영위하는 형태이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업무인가를 받은 후 상품권발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형 발행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함(개정안 제8조 내지 제11조).

(4) 상품권의 발행등록 수리, 공탁명령 등 상품권발행에 따른 제반 행정권한을 현재의 재무부장관 소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관사항으로 변경하고 재무부장관은 통일적인 상품권제도 운용을 도모키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검사·보고요구권을 갖도록 함(개정안 제5조 내지 제36조).

(5)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가·등록의 취소, 상품권발행 정지처분 또는 업무개선 명령 등을 발할 수 있도록 함(개정안 제33조, 제34조).

(6) 상품권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토

록 함(개정안 제37조 내지 제41조).

다만, 경미한 범규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체형·벌금 등의 행정형벌 대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개정안 제42조).

(7) 기 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의 상품권발행 등록사항 열람권(개정안 제30조)을 보장하고, 상품권 발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 행정기관은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 절차를 민주화함(개정안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2항).

3. 외국의 입법례 - 일본의 경우

국가마다의 고유한 선물문화, 결제방식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상품권(선급카드 포함)을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듯하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상품권(선급카드 포함)이 사용되더라도 개별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하여야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거나 그 폐해가 우려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있는 듯하다⁹⁾. 요컨대 실물에 의한 선물문화와 신용카드 등 후급에 의한 결제방식이 정착되어 있는 구미제국에서는 도서상품권 등을 제외하고는 상품권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일본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만 비교적 사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로 일본의 「전불식증표의규제등에관한법률」을 살펴본다¹⁰⁾.

1) 개 요

일본의 상품권에 대한 규제법률로는 1989년 종래의 「상품권규제법

9) 미국에서는 gift card라는 명칭으로 상품권이 사용되나 연방차원의 규제는 없고, 주법에 따라 약간의 규제가 있다; 김문환, “상품권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상품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1993.7.27., 11면 참조.

10) 中原 宏, “「プリペイド・カード等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の概要”, NBL No.422, 1989.4; 松本恒雄, “プリペイド・カード取引と消費者の権利”, 法セミナ, 1989.4.; 大川 浩, 前拂式證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プリペイドカード법)の概要”, NBL No. 463, 1990.12 参照.

(1932년 제정)「(이하 구법이라 함)을 전면개정한 「전불식증표의규제등에 관한법률」(이하 신법이라 함)이 있다. 이 법은 선수금의 2분의 1 공탁의무 등 기본적인 윤곽은 「상품권규제법」의 구조를 승계하고 있으나, ① 상품권 범위의 명확화, ② 금액표시상품권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권에 대한 공탁 의무 부과, ③ 등록·신고제도의 도입 기타 발행실태의 파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카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현상에 상응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몇가지 중요한 변경을 가하는 외에 약간의 기술적인 점도 포함하여 규정의 정비를 꾀한 것이다. 그 결과 법개정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외형상·실질상 법률의 명칭을 포함하여 신규입법에 가까운 대폭적인 개정이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품권법이 모델로 삼았던 일본의 「상품권규제법」을 전면개정한 「전불식증표의규제등에관한법률」의 주요골자(「상품권규제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본법의 대상이 되는 증표(전불식증표)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2) 본법의 대상이 되는 증표 및 발행자를 '자기형'과 '제3자형'으로 구분하고, 규제의 정도·태양을 세분화하고 있음.
- (3) 등록·신고제를 도입하고 있음.
- (4) 선수금 보전조치(공탁 등)의 대상이 되는 증표가 「상품권규제법」에서는 '금액표시상품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점을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증표로 하고 있음.
- (5) 선수금 보전조치로서 종래의 공탁에 더하여 금융기관 등에 의한 보증도 인정하고 있음.
- (6) '전불식증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1) 전불식증표의 정의

① 조 문

제2조 이 법률에서 '전불식증표'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증표 기타 물건

(승차권, 입장권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것 및 그 발행일로부터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一. 증표 기타 물건(이하 이 항에서 '증표 등'이라고 한다)에 기재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 금액(금액을 회수 기타 단위로 환산하여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단위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대가를 받고서 발행되는 증표 등(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증표 등에 기록되는 금액에 따른 대가를 받고서 당해 금액의 기록의 가산이 행하여지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증표 등의 발행자 또는 당해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다음 호에서 '발행자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차용하고, 또는 용역(역무)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들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제시, 교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二. 증표 등에 기재되거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에 따른 대가를 받고서 발행되는 증표 등(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증표 등에 기록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에 따른 대가를 받고서 당해 수량의 기록의 가산이 행하여지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발행자 등에 대하여 제시, 교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급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

② 해 설

구법에서는 대상이 되는 증표('상품권')의 정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개 증표의 실태에 따라서 법률의 운용상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계속하여 새로운 유형의 카드가 출현하는 현상에 있어서는, 무엇이 법률의 대상이 되는가를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곤란했었다. 신법에서는 이 점을 고쳐, 대상이 되는 증표를 「전불식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전불식카드와 종이로 만든(지제의) 상품권 등을 통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증표의

재질이나 금액 등의 기재(기록)의 기술적 방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경제적 성질을 갖는 것을 광범하게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래의 기술진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규정방식을 취하고자 특히 유의하였다.

위의 정의 규정에 있어서, 1호는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급부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서의 대금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증표 등을, 2호는 그 자체에 물품 등의 급부청구권이 표창되어 있는 증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예로서는 금액표시의 상품권이, 후자의 예로서는 맥주음용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증권 등이 1호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2호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판단은 곤란한 경우도 있겠으나, 어느 것이나 본법상의 취급이 다른 것은 아니므로, 어느 것에든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히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다.

정의 규정을 각호의 규정방식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호의 정의규정에는 세가지 종류의 증표가 규정되어 있다. 첫째는 종래부터 존재하여 온 백화점의 상품권 등으로서 ‘권면에 표시되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는 이른바 전불식카드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되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셋째는 이상과 같이 잔고가 감소하기만 하는 증표가 아니라 가산도 가능한 전불식카드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 기록의 가산이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셋째의 것에 관하여는 아직 기획·실험단계이지만, 금후 실용화가 기대되는 것이므로 함께 규정하도록 한 것이라 한다.

다음으로, ‘상당한 대가’의 의미인데, ‘상당한’이란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면액이 1,000엔인 전불식카드가 700엔으로 발행되고 있어도 전불식증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전혀 무상인 것이라면 ‘대가를 받고서’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불식증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대가’는 현금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수표든지 혹은 물건이든지 재산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면 상관없다. 게다가 대가를 받는 것이 전불식증표의 발행시점일 필요는 없다. 외상이어도 대가를 받고서 발행되는 것이 된다. 또한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라 함은 통상적으로 발행자의 가맹점을 가리킨다.

끝으로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의 해석인데, 이는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라는 정도의 의미이며, 이로 인하여 대금채무가 면책되는지 어떤지라는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자발행형 전불식증표의 경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후일 발행자로부터 대금의 지급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대금의 지급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면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2) 적용제외

① 조 문

제3조 이 법률은 다음에 계기하는 전불식증표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다음 호에서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전불식증표

二.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특별법률에 따라 특별한 설립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법률에 따라 지방공공단체가 설립자로 되어 설립된 법인(이들 법인 가운데 그 자격 또는 출자액의 전부가 국가 등으로부터의 출자에 의한 것 기타 국가 등에 준하는 법인으로 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이 발행하는 전불식증표

三. 발행자의 종업원에 대해서만 발행되는 자가발행형 전불식증표(당해 종업원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전불식증표

四. 할부판매법(1961년 법률 제159호) 기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수금의 보전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거래에 관계되는 전불식증표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

五. 그 사용자를 위하여 상행위인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전불식증표

② 해 설

국가 등이 발행하는 전불식증표 등에 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一호(국가·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증표) 및 二호(국가 등

의 전액출자법인 기타 국가에 준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법률상 파산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에서 적용제외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예로는, 국가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편지카드」(체신부), 국가에 준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것으로서는 「하이웨이카드」(도로공단)가 있다. 한편, 二호는 이른바 특수법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주식회사형태로써 존재하는 것(이른바 특수회사)에 관하여는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二호 법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정령에서 정하고 있다. 三호(발행자의 종업원에 대해서만 발행되는 증표 등)는 한정된 사적 자치관계내에서만 발행·사용되는 증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조를 적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구체적인 증표의 범위에 관하여는 정령에서 정하고 있다. 四호는 타법령에서 이미 본법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경우 규제의 중복을 피하는 취지이며, 五호는 이른바 상인간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증표는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3) 자기형과 제3자형

본법에서는 증표의 종류 및 발행자의 종류를 ‘자기(발행)형’과 ‘제3자(발행)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규제의 정도·태양을 달리하고 있다. 후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가중되어 있다.

우선 양자의 구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해설하면, ‘자기(발행)형’이란 증표의 발행자가 물품·용역의 제공자를 겸하는(그 증표가 발행자에 대하여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제3자(발행)형’이란 증표의 발행자와는 별도로 물품·용역의 제공자가 존재하는(그 증표가 발행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1매의 증표로 발행자에 대하여서도 제3자에 대하여서도 사용 가능한 증표는 어느쪽으로 분류되는가 가 문제되는데 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제3자(발행)형으로 분류된다. 또한 자기발행형 전불식증표와 제3자발행형 전불식증표 쌍방을 발행하는 발행자도 제3자발행형으로 취급된다.

다만, 일반사회에서는 발행자와 물품·용역제공자가 법률적으로는 다른 인격이어도 실제적으로는 일체로 간주하여도 지장이 없는 경우(부부·친

자·100%출자자회사 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제3자형으로 하여 가중된 규제를 과하는 것이 반드시 적당한 것은 아니므로, 본법에서는 물품·용역제공자가 발행자와 '정령에서 정하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기(발행)형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발행자 또는 그 밀접관계자에 대하여서만 사용 가능한 증표가 '자기발행형', 그 이외의 것은 '제3자형'이다.

위의 발행자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의 정도, 태양을 다르게 하고 있는 점은, 기존의 「상품권규제법」과 다른 특징의 하나이다. 제3자형 발행자의 경우에는 3자간의 자금결재를 중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주된 차이는 제3자형발행자에 관하여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자기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 한하여 신고로서 족하다) 및 제3자형발행자에 관하여는 현장검사·업무개선명령·업무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 점이다.

(4) 감독규정

① 자기발행자에 관한 감독규정

i. 자기발행형 전불식증표의 발행신고

자기형발행자는 선급식증표의 미사용잔액이 신고기준액에 달한 기준일(매년 3월31일 및 9월 30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소정의 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자기발행형 전불식증표의 발행을 폐지한 후 다시 그 발행을 개시한 때도 같다). 또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요한다.

ii. 자기발행형 전불식증표의 발행신고를 한 자기형발행자(이하 '신고자기형발행자'라고 한다)는 선급식증표의 발행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iii. 신고자기형발행자는 기준일마다 발행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v. 재무부장관은 신고자기형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3자형발행자에 대한 감독규정

i. 등록제

제3자발행형 전불식증표의 발행업무는 재무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법인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

제3자발행형 전불식증표의 발행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산적 기초를 갖지 아니한 법인 등 등록의 거부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등록이 거부된다.

ii. 명의대여가 금지되어 있다.

iii. 재무부장관은 제3자형발행자가 등록거부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나 본법 혹은 정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iv. 신고자기형발행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더하여, 현장검사나 업무개선명령의 대상으로도 된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 있다.

(5) 표시의무

자기형발행자 및 제3자형발행자(이하 '자기형발행자 등'이라 한다)는 그 발행하는 전불식증표(자기형발행자에 있어서는 신고기간 후에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에 성명, 주소, 권면금액, 유효기간 등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발행보증금의 공탁 등 및 전불식증표 소유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① 자기형발행자 등은 그 발행한 전불식증표의 기준일에 있어서의 미사용잔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때는 당해 기준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미사용잔액의 2분의 1 이상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발행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발행보증금은 일정한 유가증권으로써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전불식증표의 소유자는 전불식증표의 채권과 관련하여, 당해 선급식증표를 발행한 자기형발행자 등이 공탁한 발행보증금에 대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다(이 권리를 공탁금의 환급청구권이라 한다).

(7) 전불식증표발행협회

자기형발행자 등은 전불식증표의 구입자 등의 이익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선급식증표의 발행과 관련한 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그 명칭중에 전불식증표발행협회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일본 민법 3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협회는 전불식증표에 관계되는 불만처리나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행정상의 규제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자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단체이다.

(8) 부 칙(생략)

V. 입법방향

1. 현재의 경제실정을 감안할 때 상품권의 발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상품권에 의한 뇌물공여를 합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한편 물가상승·통화팽창·중소영세업체의 위축등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와 이를 허용하는 경우 감당하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저울질해 볼 때, 이를 전면금지하는 경우의 비용이 더 크고 누적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상품권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품권제도의 운용방향이 잡혀져야 할 것이다.

2. 현행 상품권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1973년에 한차례 소폭으로 개정된 이래 행정지침에 의하여 사문화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품권의 발행허용을 전제로 하여, 상품권의 적절한 발행·유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문제와 신용거래질서유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상품권의 발행·유통과 관련한 소비자보호조치는 크게 신용위험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과 기타 소비자보호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신용위험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으로는 그 핵심으로 ①선수금 보전조치의 의무화, ②발행주체의 참입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기타 소비자보호대책으로는 ①약관의 작성의 의무화 및 그 공시성의 확보, ②소비자로부터의 불만처리를 위한 업계·관련단체 등의 역할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4. 신용거래질서유지의 관점에서 상품권에 대해서는 결제수단의 하나로써 상환 및 대금지급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제3자발행형의 경우 발행주체로부터 물품·서비스 급부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확실성이 요구된다. 제3자발행형 상품권에 대한 결제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참입규제 등 발행주체의 능력면에서 담보하는 이른바 예방적 대책과 대금의 수령인인 물품·서비스 급부자의 채권을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구체조치의 양자를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선급카드와 관련하여서는, 선급카드가 상품권의 하나의 유형이고 규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만큼, 입법상 상품권과 통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권법을 발전적으로 개정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선급카드를 포함한 상품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경우, 상품권은 지난 8월 12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발효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일반적인 유통성을 지닌 거의 유일한 무기명증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물론 향후 상품권의 운용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상품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더라도 상품권이 금융실명제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 상품권법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인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도모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발행인이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가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공중에 대하여 매출하는 일람출급의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인 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도모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인이 증표에 기재(전자적 방법 등에 의해 기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금액(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말한다)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공중에 대하여 매출하는 무기명 증표로서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제시·교부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차용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자기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상품권의 발행인으로 부터 물품을 구입·차용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3. “제3자발행형 상품권”이라 함은 당해 상품권의 발행자와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하지 않은 상품권을 말한다.

4. “자기형 발행자”라 함은 자기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제3자형 발행자”라 함은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금액표시 상품권”이라 함은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구입·차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7. “물품표시 상품권”이라 함은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구입 또는 차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8. “용역표시 상품권”이라 함은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9. “권면금액”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되는 금액으로서 상품권의 소유자가 발행인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을 말한다. 물품표시 또는 용역표시 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표에 대하여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적 성격을 지닌 증표
2. 승차권과 같이 예매가 일반화되어 있거나 영화관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기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또는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

제4조(상품권의 종류)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권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액표시 상품권
2. 물품표시 상품권
3. 용역표시 상품권

제2장 자기발행형 상품권

제1조의3(발행등록 등) ① 재무부장관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예정액, 상품권의 양식 등의 등록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자기발행형 상품권의 발행등록) ① 자기형 발행자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 상호, 주소, 법인(인격이 없는 사단을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2. 발행하고자 하는 상품권의 종류, 권면 금액 및 서식
3. 상품권발행 예정금액
4. 기타 재무부령에서 정한 사항

② 전항의 등록을 한 자기형 발행자는 동항 각호에 규정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대없이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행등록을 하여야 하는 도지사 등이라 함은 발행자의 주소지 또는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조(자기형 발행자의 지위승계)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기형 발행자가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양도 받은자·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상속인은 등록된 자기형 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형 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대 없이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기발행형 상품권의 발행 폐지 등의 신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형 발행자가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대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기형 발행자인 법인이 합병이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지대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자형 발행자

제8조(인가) ① 제3자형 발행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이 법에 의해 발행인가를 취소 받은 경우 그 취소일로 부터 3년이상이 경과 했을 것

② 전항의 경우에 재무부장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할 것

③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자본금 또는 출자금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제3자형 발행자는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제3자형 발행자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3자형 발행자의 지위승계등) ①

제3자형 발행자가 상품권발행에 관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제3자형 발행자에 대하여 합병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제3자형 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이들이 제8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형 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3자형 발행자가 합병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되거나 제3자발행형 상품

권의 발행을 폐지 했을 때에는 제3자형 발행자에 대한 제8조의 인가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품권 발행자는 해산 또는 발행폐지의 내용을 지대없이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공동발행) 자기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 수인이 연합하여 상품권을 공동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중 제3자형 발행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명의대여 또는 업무위임의 금지) 제3자형 발행자는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타인으로 하여금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서는 안된다.

제4장 상품권의 발행

제6조(권면에 기재할 사항) ① 상품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품권이라는 문자
2. 급여의 내용
3. 소유자에 상환하여 이행한다는 뜻
4. 상환할 영업소
5. 발행년월일
6. 발행번호
7. 발행자의 성명 및 명칭 또는 상호
8. 발행인의 기명날인

제12조(상품권에 기재할 사항 등) ① 상품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품권이라는 문자
2. 발행자의 성명 또는 상호
3. 발행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4. 권면금액 및 상환대상물의 내용
5. 상환장소
6. 발행연월일
7. 발행번호
8.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 당해 유효기간
9. 발행자의 기명날인

② 전항 제2호의 기재에 있어서는 금액표시 상품권은 금액을, 물품표시 상품권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규격, 품질과 그 가액을, 용역표시 상품권에는 용역의 내용과 그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권면금액의 제한) 권면금액 또는 가액의 최고한도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10. 권리실행에 관한 방법

11. 발행등록 관서명

12. 기타 재무부령에서 정한 사항

② 전항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금액표시상품권에는 금액을, 물품표시상품권에는 물품의 품질·규격·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그 가액을 용역표시상품권에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그 가액을 기재함으로써 상품권과 교환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권면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등록 사실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상환보장의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발행자가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상품권 유효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1년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감시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권면금액의 제한) 재무부장관은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가액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상품권 발행제한 등) ① 재무부장관은 소비자 보호, 물가의 안정 및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품권

교환대상 물품 및 용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재무부장관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에게 대하여 상품권의 연간 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전공탁) ① 도지사 등은 상품권 발행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발행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전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품권 발행자가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지대없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공탁) ① 제1조의2 제2항 제1호의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매년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및 12월31일 현재에 있어서의 그 상품권 발행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익월 15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상품권 발행액은 상품권의 상환미필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전조 제2항 제1항의 공탁은 상품권 발행자의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 금액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액을 합산하지 아

제17조(공탁) ①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매분기말 현재에 있어서의 상품권 발행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15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상품권 발행액은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 중 기준일 현재 미상환된 상품권의 총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발행보증금의 공탁은 상품권 발행자의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탁금액에는 제16조 제1항에 의한 공탁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니한다.

⑤ 재무부장관은 제1조의2 제2항 제2호의 물품표시 상품권 또는 동항 제3호의 용역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명할 수 있다.

제4조(공탁의 신고와 공탁서의 제출)

① 상품권의 발행자가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물 수입의 기재가 있는 공탁서의 사본 및 공탁가격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대없이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공탁을 한 상품권의 발행자에 대하여 공탁물수입의 기재가 있는 공탁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유가증권으로서의 대납) 제1조의3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유가증권으로 대

⑤ 상품권 발행자가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지대없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탁을 한 상품권 발행자 등은 당해공탁금이 상품권 소유자의 권리실행 완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탁의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지대없이 공탁을 하고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전 각항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공탁물의 보관·대체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유가증권으로서의 대납)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유가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다.

납할 수 있으며 대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대납가액은 자본시
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탁금으로 대납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대납가액
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금융기관등의 지급보증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무자는 공탁에
갈음하여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
약(보증보험회사와의 보증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
을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급보
증계약 등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
는 이 법에 의한 공탁의무는 이행된 것으
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공탁의무자는 지
대없이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탁에 갈음한 채무지급보증
의무 기준액 및 채무지급보증을 할 수 있
는 금융기관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 도지사 등은 상품권 소유자의 권익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
한 상품권발행자에 대하여 당해 공탁의
무기준액의 전액 또는 일부액의 공탁을
명할 수 있다.

제5조(공탁물 반환의 승인) ①
상품권의 발행자가 공탁한 금
전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받

제20조(공탁물의 반환승인) ① 상품권의
발행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받으려 할 때에는 도지사 등의 승

으려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상품권의 발행자가 전항의 승인을 얻으려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반환을 얻으려하는 금전의 액 또는 반환을 얻으려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기호, 번호, 매수, 권면액 및 공탁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상환의무) 제1조의 2 제2항 제2호의 물품표시 상품권 또는 동항 제3호의 용역표시 상품권의 발행자는 현금거래에 우선하여 상환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지대될 경우에 그 상품권의 소유자로 부터 당해 상품권 가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제1조의3 제2항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이행한 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소유자는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품권의 발행자가 전항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 금전의 액 또는 반환을 받으려하는 유가증권의 종류, 기호, 번호, 매수, 권면액 및 공탁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상품권 소유자의 권익 및 권익실행

제21조(상환받을 권리) ① 제4조 제2호의 물품표시상품권 또는 동조 제3호의 용역표시 발행자 등은 상품권 소유자에 대하여 현금거래에 우선하여 상환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지대될 경우에 그 상품권 소유자로 부터 당해 상품권 가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금액표시상품권 발행자 등은 동 상품권의 소유자가 권면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우선변제 받을 권리) 상품권의 소유자는 그 상품권의 상환미필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공탁한 공탁물 등 발행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

그 상품권의 상환미필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공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권리실행의 신청과 재판)

- ① 제1조의3 제2항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이행한 자가 그 상품권의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그 상환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상품권의 소유자는 그 발행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전조에 규정하는 권리실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 ③ 신청에 대한 재판은 상품권의 발행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

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상환)

- ①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감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상품권발행자 등은 상품권 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권리실행의 신청과 재판)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의무를 이행한 자가 그 상품권의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상환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상품권의 소유자는 그 발행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우선변제 등을 받기 위한 권리실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한다.
- ③ 신청에 대한 재판은 상품권의 발행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또는 상품권의 발행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⑥ 신청을 이유있다고 하는 재판은 상품권의 소유자 전원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⑦ 신청인이 전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후에는 신청의 취하를 할 수 없다.

제14조(재판확정후의 절차) ① 전조 제6항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공고로써 상품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채권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는 법원이 하여야 할 등기사항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최고를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의 국채의 공탁서 및 상품권발행에 관한 장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전조 제6항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국채를 환가시켜야 한다.

제15조(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액의 공탁) ① 법원은 전조 제1항의 기간만료후 지대없이 배당표를

상품권의 발행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⑥ 신청을 이유있다고 하는 재판은 상품권의 소유자 전원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⑦ 신청인이 전항의 재판의 고지를 받은 후에는 신청의 취하를 할 수 없다.

제25조(재판확정 후의 절차) ① 제24조 제6항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공고로써 상품권의 소유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채권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뜻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는 법원이 하여야 할 등기사항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의 최고를 할 때에는 도지사 등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의 공탁서 및 상품권 발행에 관한 장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24조 제6항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집달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국채를 환가시켜야 한다.

제26조(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액의 공탁) ① 법원은 전조 제1항의 기간 만료후 지대없이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실시 기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2주간전에 그 취지를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상품권의 소유자 및 상품권의 발행자에게는 개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공고에 이를 준용한다.

④ 배당기일에 참여하지 아니한 상품권 소유자의 채권 및 기일까지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16조(환가 및 배당절차와 기간

계산) ① 유가증권의 환가 및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알지 못하는 상품권의 소유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신청을 한 상품권의 소유자 또는 발행자가 제기하여야 할 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92조의 기간은 그 소유자를 안 때로부터 이를 계산한다

② 법원이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 실시 기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2주간전에 그 취지를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상품권의 소유자 및 상품권의 발행자에게는 개별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공고에 이를 준용한다.

④ 배당기일에 참여하지 아니한 상품권 소유자의 채권 및 기일까지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27조(환가 및 배당절차와 기간계산)

① 유가증권의 환가 및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알지 못하는 상품권의 소유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신청을 한 상품권의 소유자 또는 발행자가 제기하여야 할 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92조의 기간은 그 소유자를 안 때로부터 이를 계산한다.

제28조(금융기관에 대한 권리실행)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무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탁에 갈음하여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한 권리실행을 하고자 하는 상품권 소유자는 당해 채무지급보증계약 조건 등에 따라 보증

인 등을 상대로 하여 권리실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실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품권 발행자는 그 사실을 지대없이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소유자의 권리실행 완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지급보증액이 보증의무 기준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지대없이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 감 독

제9조(장부의 비치와 제출) ① 상품권의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에 관한 장부를 영업소별로 조제하고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 상품권의 발행년월일, 발행번호, 권면금액 또는 물품의 종류, 상환내용 및 상환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월보) ① 제1조의2 제2항 제1호의 금액표시 상품권의 발행자는 매월 발행한 금액·상환

제29조(장부의 작성보존) 상품권의 발행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품권의 발행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열람) 도지사 등은 상품권발행자의 등록사실 등을 일반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발행실적 등의 보고) ① 상품권의 발행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중 발행한 금액, 상환한

한 금액 및 매월 말일 현재에 있어서의 발행액을 권면금액별로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5일 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제1조의2 제2항 제2호의 물품표시 상품권 또는 동항 제3호의 용역표시 상품권의 발행자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항의 규정에 이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품권의 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물건의 검사를 시킬 수 있다.

② 당해 공무원이 전항의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금액 및 매분기말 현재에 있어서의 미상환 누계액을 상품권 종류별, 권면금액 또는 가액별내역 및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이내에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기발행형 상품권의 연간 매출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기형 발행자 또는 제3자형 발행자는 사업년도 종료후 4개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검사증명을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품권의 발행자 등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발행 또는 상환실태 등의 업무에 관한 검사를 시키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업무개선 명령) ① 도지사 등은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운영에 대하여 상품권 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상품권 발행자에 대하여 업무 방법의 변경 기타 업무 운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등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진술 또는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인가·등록의 취소 및 발행의 정지) ① 재무부장관 또는 도지사 등은 자기형 발행자 또는 제3자형 발행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품권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 또는 가액의 최고한도를 정한 경우에 당해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상품권과 상환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연간 발행한도를 제한한 경우에 이를 위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4.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제출·보고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②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③ 도지사 등이 제3자형발행자의 업무인

제16조의2(권한의 위임) 재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의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이미 발행된 상품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3배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제3자형발행자 업무인가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재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의 감독) 재무부장관은 소비자와 발행자 등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상품권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집행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 벌 칙

제37조(벌칙)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의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품권발행 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아니하고 발행한 상품권의 총가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발행된 상품권 가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②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상품권의 발행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당한자 또는 발행을 정지당한자가 당해 기간중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의2(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공탁하여야 할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3배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1.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액표시 상품권의 발행자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1조의2 제2항 제2호의 물품표시 상품권의 발행자 또는 동항 제3호의 용역표시 상품권의 발행자가 제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하여진 공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하여진 공탁을 아니한 때

제1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

제38조(벌칙) 제16조 제1항, 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 등에 의한 상환보장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제3자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한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상품권 교환대상 물품·용역 또는 연간 상품권발행 한도를 제한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위의 기재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제1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
3. 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8조의3(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한도를 위반한 상품권의 발행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상품권의 발행자

제18조의4(동전) 제1조의2 제2항 제2호의 물품표시 상품권 또는 동항 제3호의 용역표시 상품권의 발행자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상품가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

4.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검사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가액의 최고한도를 정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자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상품권 발행자 등이 제21조 또는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환의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상품권 발행자 등이 제

제19조(벌칙의 적용) 상품권의 발행자는 그 대리인, 동거인, 고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영업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써 그 벌칙을 면할 수 없다.

제20조(동전) 이 법에 의하여 상품권의 발행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기타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4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제19조 제2항 및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3조(벌칙의 적용) 상품권의 발행자 등은 그 대리인·동거인·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영업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해 발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써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44조(벌칙의 적용) 이 법에 의하여 상품권의 발행자 등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표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4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을 구비한 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會·文化·教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産 業·經 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 林·水 産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 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 境·保 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 院·法 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1. 최근입법의견목록

(1993.7.11 ~ 1993.8.10)

- ◎ 헌 정 69
 -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
 -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
 - 통합선거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정당법 개정의견

- ◎ 통일 · 외교 · 국방 73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및 개정의견
 - 통신비밀보호법(도청방지법)안 및 입법의견
 - 보안관찰법 폐지의견
 -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 병역법 개정안
 -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
 - 군인연금법 개정안

- ◎ 내무 · 지방행정 76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의견
 -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 개정의견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안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및 철회의견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안 및 입법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안

◎ 사회·문화·교육 80

- 노인복지법 개정안 및 개정의견
- 사회보장기본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의견
- 독서진흥법안 및 입법의견
- 언론관계법 개정의견
- 종합영상진흥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교육법 개정안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개정의견
- 고용관련법에 관한 입법의견
 - (1) 고용관련법안
 - 고용정책기본법안
 - 고용보험법안
 -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안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 (2) 고용관련법안에 대한 입법의견

◎ 산업·경제 87

-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에 관한 입법의견
- 외자도입법 개정안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
- 국채법 개정안
- 상품권법 개정안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의견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에 관한 입법의견
 - (영장없는 예금계좌추적의 적법성 여부)

◎ 농림·수산 94

- 낙동진흥법 개정의견
- 농지기본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건 설	94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안	
○ 국유재산법 개정안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 과학기술·교통·체신	97
○ 자동차관리법 개정의견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 위성방송법안	
○ 도로법시행령 개정의견	
◎ 환경·보건	98
○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입법의견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및 개정의견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안	
○ 한국자원재생공사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토양환경보전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법원·법무	101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안	
○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 법무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2. 최근입법의견 요약

(1993.7.11 ~ 1993.8.10)

◎ 헌 정

○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

-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의 규정은 헌법소원제도의 공동화를 야기하므로 개정되어야 하고, 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선거소송사건의 경우에도 민주적 헌법질서의 보호라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도록 하여야 함(계희열, 고려대 교수).
-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이원적 사법부제는 헌법재판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적·소극적인 것으로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도 혼선을 야기하므로 헌법재판소를 사법부구조의 정점에 놓는 일원적 사법부제도로 전환하여야 함(권영성, 서울대 교수).
- 현행 헌법 제107조 2항에 의하면 공권력행사중의 명령·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강길선, 민주당 국회법사위원).
-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제기능발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판관수를 15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5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1차 심판을 거치도록 하며, 「전원합의체」는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이상규, 변호사).

: 세계 93.8.9., 8면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으로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본회의의 승인없이도 국정조사권이 자동적으로 발동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의 경우에도 일반의안처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효

력이 발생하도록 개정되어야 함(민자당).

- 과거 4당체제(민정·평민·민주·공화당)하에서 정치적 타협의 부산물로 입법화되어 그 개념이 모호하거나 논리적 모순을 내포한 규정을 지닌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①「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본회의에 보고한 후,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수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국정조사권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②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조사기간·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받아야 하는데, 다수당이 거부하면 국정조사활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③현행법상 조사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구성되었을 경우,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되되 조사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위원은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내의 「소위원회」나 「반」의 구성은 동일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국정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은 개정되어야 함(김기홍, 세계일보 기자).

: 세계 93.7.14.,3면; 국민 93.7.16.,3면; 한겨레 93.7.16.,3면; 한겨레 93.7.17.,2면; 국민 93.8.10.,2면; 중앙 93.8.10.,2면

○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

-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70조 2항의 '기부행위 제한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단체 등이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금권·타락선거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예처럼 처벌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함(박용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동아 93.8.4.,4면; 동아 93.8.6.,3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8면) · 제6호(66~67면) · 제7호(58면) · 제8호(65~66면) 참조

○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

-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방향으로서는 ①후보자의 홍보물 제작 · 발송비용 등의 선거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선거공영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②현행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③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자가 당적을 이탈할 때에는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식은 현행 의석비율이 아닌 득표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⑤선거구제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1개 선거구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도시 등의 인구과다선거구의 경우에는 분구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고, ⑥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의 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범전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1~2개월이내의 단기간에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민자당).
-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①선거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대선구제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②전국구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구 의석비율을 지역구와 동수로 구성하되 유권자가 지역구 출마후보와 전국구 국회의원명부를 제시한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 「정당투표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야 하며, 아울러 전국구 국회의원의 공천은 중앙당 대표와 지역구 대표가 동수로 시·도별로 '전국구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도록 하고, 전국구 국회의원의 명부작성은 시·도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하여야 함(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 전국구 국회의원은 당의 정강정책에 의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것이므로 소속정당을 탈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여야 함(김종필, 민자당 대표).
- 현행 전국구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는 ①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축소하도록 하고, ②의석배분방식은 의석비가 아닌 득표비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자가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

하도록 하여야 함(중앙일보 사설).

- 전국구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는 ①전국구 후보공천의 경우, 반드시 직능대표들이 골고루 발탁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하고, ②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수수에 의한 후보공천권의 매매는 금지되어야 하며, ③지역구 당선자수와 총유효득표수로 전국구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지역구 당선자수와 유효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투표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함으로써 전국구 국회의원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④전국구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여야 함(한국일보 사설).

: 세계 93.7.20.,5면; 국민 93.8.2.,2면; 중앙 93.8.2.,1면; 경향 93.8.3.,1면; 동아 93.8.3.,3면; 서울 93.8.3.,1면; 세계 93.8.3.,1면; 조선 93.8.3.,2면; 중앙 93.8.3.,3면; 한겨레 93.8.3.,2면; 한국 93.8.3.,1면; 한국 93.8.4.,3면; 서울 93.8.5.,3면; 중앙 93.8.8.,2면; 국민 93.8.9.,2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8면) · 제6호(66~67면) · 제7호(58면) · 제8호(65~66면) 참조

○ 통합선거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현행 각종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①선거일의 경우,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이전 70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임기만료이전 60일을 기준으로 첫번째 금요일을 선거일로 하되, 선거일은 공휴일로 하고, ②선거운동기간의 경우, 대통령선거는 현행 28일에서 20일로, 국회의원선거는 현행 17일에서 15일로 단축하며, ③신임대통령 임기개시일의 경우, 전임대통령의 임기가 만 5년되는 날의 다음날 상오 10시부터 임기가 개시되도록 하는 등 각종 선거법을 통합하여 단일된 『통합선거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서울 93.8.4.,1면; 조선 93.8.9.,1면

○ 정당법 개정의견

- 정당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지역선거구 총수(237개)의

5분의 1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소법정지구당수(48개)를 대폭 축소하고, 정당가입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제한되고 있는 언론인·교직원 등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정당법』을 개정하고자 함(민자당).

: 조선 93.8.9.,3면; 국민 93.8.10.,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24면)·제6호(68면)·제8호(66면) 참조

◎ 통일·외교·국방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및 개정의견

- ①인권보호차원에서 수사과정상의 적법절차를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②대통령훈령으로만 되어 있는 방첩테러·국죄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기능을 국가안전기획부의 업무로 규정하며, ③신설될 국회 정보위가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안전기획부법개정안』을 마련함(국가안전기획부).
- ①독일의 경우, 해외정보수집권은 총리실 산하 연방정보부가 담당하고, 국내정보수집권은 내무장관 산하 헌법보호청이 담당하며, 군사정보수집권은 군방첩대가 담당하고, 정보조정권은 총리실의 차관이 정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보기관을 조정하고 있으며, ②미국의 경우, 정보수집은 CIA를 포함한 13개 정보기관이 각각 영역별로 담당하고, 해외정보조정권은 CIA가 담당하되 국내정보조정권을 가진 정보기관은 없으며, ③보안감사권의 경우, 독일과 미국에서는 현재 담당하는 정보기관이 없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기획부는 해외정보수집권·국내정보수집권·수사권·정보조정권·타부처 보안감사권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그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수사권을 폐지하고, 정보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함(박상천, 민주당 국회의원).

: 한겨레 93.7.13.,1면; 동아 93.7.15.,2면; 서울 93.7.15.,2면; 세계 93.7.15.,2면; 동아 93.8.3.,4면; 조선 92.8.3.,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68면)·제9호(87면) 참조

○ 통신비밀보호법(도청방지법)안 및 입법의견

- ①반국가활동 혐의자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간의 통신도 감청·검열할 수 있도록 하고, ②범죄수사상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 폭발물에 관한 죄, 살인·유괴죄, 균형법상의 반란죄, 마약법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대마관리법위반죄, 범죄단체에 의한 범죄 등의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예외적으로 감청·검열을 허용하며, ③적법절차 없이 검열·감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을 과할 수 있고, 그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안』을 마련함(민자당).
- 미국의 경우, 판사 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원에서 안보도청에 관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데, 이는 영장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국가기밀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므로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에 있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박상천, 민주당 국회의원).

: 동아 93.7.11.,11면; 한겨레 93.7.13.,3면; 경향 93.8.3.,1면; 동아 93.8.3.,4면; 조선 93.8.3.,4면; 중앙 93.8.3.,2면

※ 『주요국가의 도청방지법제』, 「현안분석 93-3」(한국법제연구원 부정기 간행물) 참조.

○ 보안관찰법 폐지의견

- 국가보안법위반 등 특정사범의 재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목적으로 1989년 6월부터 시행중인 보안관찰처분제도는 ①공안사범에 대해 거주이전·사생활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정치의사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②보안관찰처분은 넓은 의미에서 '형법'인데, 법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③관찰처분을 당한 대상자가 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소송의 제기방법이 없으며, ④보안관찰처분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행정부 산하의 심의위원회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므로 현행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함(한겨레 사설).

: 한겨레 93.8.10.,2면

○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 1972년에 제정된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왔으므로 ①「누설 때 국가안보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규정된 현행 군사기밀의 개념을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②일반인이 과실로 군사기밀의 공개를 누설한 경우에 2년이하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신문·방송 등에 의한 군사기밀누설 때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들은 삭제하며, ③대국민홍보 및 안보상 공개하는 것이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민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④군사기밀의 공개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산하에 보안정책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⑤외국인에 의한 군사기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개정안』을 마련함(당정회의).

: 중앙 93.8.5.,1면; 경향 93.8.6.,3면; 동아 93.8.6.,2면; 서울 93.8.6.,1면; 한겨레 93.8.6.,2면; 한국 93.8.6.,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3면)·제3호(47면)·제6호(69면) 참조

○ 병역법 개정안

- ①공공봉사복무제를 도입하고, ②공익근무요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호·감시·행정지원 등의 공익관련 분야와 저개발국의 의료·농업기술·교육 등의 국제협력지원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며, ③병역자원 관리가 본적지와 거주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거주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④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⑤영창처분도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마련함(당정회의).

: 조선 93.7.20.,2면; 중앙 93.7.26.,22면; 경향 93.7.20.,23면; 서울 93.7.27.,2면; 중앙 93.7.28.,1면; 한국 93.7.27.,29면; 서울 93.7.30.,21면; 세계 93.7.30.,3면; 경향 93.8.6.,2면; 한겨레 93.8.6.,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7호(58면) 참조

○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

- ①예비군복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33세까지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군연령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전역후 8년동안만 복무하면 되도록 「연한제」를 도입하고, ②예비군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원훈련기간을 현행 3박 4일에서 2박 3일로 단축하되 일반훈련의 경우는 연2회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향토방위훈련은 연2회 1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며, ③예비군관리요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정년은 현행 50세에서 53세로, 직장예비군 대대장의 정년은 근속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을 마련함(국방부).

: 서울 93.8.6.,1면; 한겨레 93.8.6.,2면; 국민 93.8.9.,1면

○ 군인연금법 개정안

- ①퇴직연금 1년분을 선불로 지급하던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②상이등급을 3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면서 등급별로 보수연액의 50~80%를 지급하도록 하며, ③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에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더라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④행방불명자 등의 재산상속인(유족)도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개정안』을 마련함(당정회의).

: 한겨레 93.8.6.,2면

◎ 내무·지방행정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의견

- 경찰공무원승진심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현행 승진심사위원회를 '승진심사심의위원회'와 '승진심사의결위원회'로 나누

어 '승진심사심의위원회'에서는 승진임용예정인원을 추천하며, '승진심사의결위원회'에서는 최종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②근무성적의 평가 기준도 최근 2년동안의 근무성적을 각 50%씩 반영하던 현행 제도를 최종 3년동안의 근무성적 가운데 1년이내의 성적은 50%를, 2년이내의 성적은 30%를, 3년이내의 성적은 20%를 반영하도록 하며, ③지휘관의 주관에 따른 점수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현행 수·우·미·양·가로 나누어 각 3점차를 두었던 제도를 각 2점차로 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함(경찰청).

: 경향 93.7.31.,22면; 서울 93.7.31.,18면; 한국 93.7.31.,2면

○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 개정의견

- 국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있거나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령안을 제정할 때,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입법예고제」인데, 현행법은 입법예고할 법령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입법예고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특정분야를 제외한 모든 법령을 입법예고 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의 공개는 일간신문에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야 함(김진국, 중앙일보 기자).

: 중앙 93.7.30.,2면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개정안

- 현재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김포국제공항의 보안승무감독 및 정보활동업무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이에 필요한 인원 14명을 서울경찰청에 충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개정안』을 의결함(국무회의).

: 동아 93.7.30.,2면

○ 정부조직법 개정의견

-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직급과 직책을 분리하여 과장에 보하지 않는 「4급 서기관제도」를 도입하고, ②현행법상 4급으로 임명되는 과장을 3급(부이사관)의 경우에도 보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자 함(총무처).

: 조선 93.7.26.,1면; 서울 93.8.8.,2면; 세계 93.8.8.,2면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철회의견

- 허례허식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①경조사 때 명의를 표시한 화환과 화분의 진열 및 증여를 금지하되, 명의를 표시하지 않은 화환과 화분에 대해서는 혼례시 2개·상례시 10개를 진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결혼예식장업과 장의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고시제로 묶여있던 예식장사용료 등의 예식관련 요금도 신고제로 전환하며, ③장의용품의 판매를 자율화하여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④현재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영안실은 무료나 실비로 장례식장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내에 기준시설을 갖추어 정식 장례식장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⑤가정의례업소의 범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⑥무신고영업과 호텔의 예식장영업에 대한 벌금은 현행 2백만원에서 1천만원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보사부).
- 대규모 화훼단지를 건설하여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로 한 농림수산부의 화훼분야지원정책에 따라 이제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화훼산업이 보사당국과 여당의 가정의례법개정방침 때문에 내수기반의 약화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동 방침의 철회를 요구함(한국화훼협회 비상대책위원회).
- 우리의 꽃소비가 생활문화로 정착될 때까지는 농민의 생계보호차원에서 급격하게 농민의 목을 죄는 제도의 시행은 유보되어야 함(정순주, 전남대 교수).
- 화환사용금지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먼저 강구한 후에 법률이 시행되어야 함(박응격, 한양대 교수).

: 세계 93.7.13.,21면; 중앙 93.7.17.,2면; 중앙 93.7.19.,9면; 경향 93.7.20.,22면; 조선 93.7.20.,31면; 중앙 93.7.20.,22면; 한국 93.7.20.,4면; 세계 93.7.26.,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74면)·제8호(75면)·제9호(91~92면)

참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안 및 입법의견

-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일반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②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려면 중앙행정기관장·총무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총무처장관은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연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공공기관은 보유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화일을 이용하거나 누설·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④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⑤본인의 정보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열람 청구권과 정정요구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함(총무처).
-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함 (강경근, 숭실대 교수).

: 서울 93.7.23.,1면; 서울 93.7.23.,17면

○ 지방자치법 개정안

- 본격적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민선기관장과 지방의회의 독주 및 횡포,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지나친 유착이나 대립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①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이 주민들의 이해와 현저하게 배치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②조례·예산 등 의회의결대상사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 결정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이 주민들의 이해와 배치되고 그대로 시행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며, ③주민 스스로도 자치단체·지방의회의 결정내용이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거나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발의의 형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④주민투표회부에 필요한 지방의회 정족수나 주민발의에 필요한

주민수는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함(내무부).

: 중앙 93.8.5., 23면

◎ 사회·문화·교육

○ 노인복지법 개정안 및 개정의견

-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게 허용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개인 또는 민간기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개정안』을 마련함(보사부).

- 중산층 노인들이 사회복지시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사업에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아울러 정부는 노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함(김동배, 연세대 교수).

: 세계 93.7.12., 9면; 동아 93.7.23., 2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81면) 참조

○ 사회보장기본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노인·장애인·모자가정지원제도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현행법상 별도로 도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이 미흡하므로 ①사회보장의 범주 및 기본이념, ②각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비율, ③사회보장업무의 관장기관 조정, ④사회보장심의기구의 기능 및 위상정립, ⑤사회보장제도 상호간의 지급액수준과 비용부담조정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자 함(보사부).

: 세계 93.7.19., 1면

○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에 관한 입법의견

-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①의무교육의 범위에 대하여 국민학교·중학교 과정은 규정하면서

유치원 교육과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화는 제외시킴으로써 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②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일반교사로서의 자질과 특수교육소양을 갖춘 자'로 규정함으로써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장애인의 의무교육범위를 유치원 교육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전공자가 특수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유종필, 한겨레신문 기자).

: 한겨레 93.7.17., 1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87면) 참조

○ 독서진흥법안 및 입법의견

- ①생활의 기초현장인 아파트 등의 주거단지·기업·학교 등에 문고(독서방 또는 책사랑방)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②도서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기부금·공공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부가모금 및 채권발행 등을 통하여 조성하도록 하며, ③정부는 독서진흥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④문고설치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⑤중앙독서진흥심의회를 구성하여 독서시설과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서진흥법안』을 마련함(출판협회).
- 현행 「도서관진흥법」으로서는 독서진흥활동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독서진흥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서진흥법』을 제정하여야 함(윤청광 책의해조직원위원회 홍보간사, 민자당 사회개혁특별위원회 주최 「독서진흥법에 관한 공청회(1993.8.4)」).
- 『독서진흥법』의 제정동기가 현행 「도서관진흥법」의 도서관이 달성해야 할 목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제정은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어 부당함(한상완 연세대 교수, 민자당 사회개혁특별위원회 주최 「독서진흥법에 관한 공청회(1993.8.4)」).
- 『독서진흥법』의 제정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독서지도교사의 관리방안과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방안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김갑수 문화체육부 사무관, 민자당 사회개혁특별위원회 주최 「독서진흥법

에 관한 공청회(1993.8.4)」).

- 『독서진흥법안』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중의 문화부문계획으로 추진중인 공공도서관설치사업과 배치되는 등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법제정을 반대함(한국도서관협회, 「독서진흥법제정 반대의견서」).

: 세계 93.8.7.,9면; 국민 93.8.9.,1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96면) 참조

○ 언론관계법 개정의견

- 오늘의 언론수용자는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능동적인 존재로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유언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언론심의제도의 개편과 반론권을 독자에게 부여하는 음부즈맨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서정우, 연세대 교수).
- 현행 언론의 시장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공소유 형태를 기본축으로 하는 언론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고, 아울러 영향력 있는 방송매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야 함(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한국프레스센터 주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및 책임」 세미나(1993.7.15)).

: 세계 93.7.12.,8면; 세계 93.7.13.,2면; 경향 93.7.16.,17면

○ 종합영상진흥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국내 영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행 「영화법」·「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하여 ①영화산업의 범주를 비디오까지 포함한 영상산업으로 확대하고, ②개봉관에서 관객들에게 징수하는 문예진흥기금과 대기업 등의 보조금으로 제작금고를 설치하며, ③민간자본이 영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 등에는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영상진흥법(가칭)』을 제정하고자 함(민자당).

: 서울 93.7.31.,18면

○ 교육법 개정안

- 본격화될 교육의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교육·학술분야의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법에 '국제교육협력 및 국제화교

육'이라는 장을 신설하여 ①교육학술분야의 국제교육협력촉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②외국에서 한국에 대해 교육하고 연구하는 개인 및 기관을 지원하며, ③외국인 및 외국기관의 국내교육활동에 관한 시책근거를 부여하고, ④국민의 국외활동지원을 위한 귀국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개정안』을 마련함(교육부).

: 동아 93.8.6., 23면; 한겨레 93.8.6., 14면; 세계 93.8.9.,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76~78면) 참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개정의견

- ①취학전 어린이는 예체능과목에 한해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이 가능하지만 유치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고, ②국민학교 학생의 일반과목에 대한 과외교습은 허용하되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따라 허용과목과 수강시기를 결정하며, ③중학생들이 거주지 인근 중소규모의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학원시설 기준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중학생의 과외교습소의 교습은 제한하고, ④외조모·고모·외삼촌 등 삼촌이내의 혈족간은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⑤학원시설기준을 포함해 동일계·동일과목 학원간의 거리제한 등 교습수요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하되, 과도하게 규정하지 않도록 하고, ⑥학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자격기준을 원칙적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면서 정기연수를 제도화하며, ⑦학원의 계열구분을 전면 재조정하여 학원설립의 신축성을 확대하면서 사회교육의 특성을 신장하고, ⑧수강료기준을 주무관청이 정하도록 하되 이를 학원이 활용하도록 하며, ⑨학원운영에 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에 학원관련 단체가 강사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부모회 등이 학원의 교습내용 및 수강료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함(교육부).
- 학교와 학원은 나름의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학교교육은 공공성을 중시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적·문화적 소양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교육은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개인

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부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은 시대조류를 수용한 법률안으로서 타당함(박해진, 국민일보 기자).

: 한국 93.7.15., 5면; 국민 93.7.28., 9면

○ 고용관련법에 관한 입법의견

(1) 고용관련법안

고용정책기본법안

- ①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상공부·교육부·노동부·과학기술처 등의 장관과 노사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고용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책·정책수립시에는 노동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며, ③노동부가 정부·공공투자사업의 실시 시기조정 및 취로사업의 실시 등 긴급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국민 경제상 긴급하지 않는 골프장·향락업소 등의 특정업종에 대하여 종사자모집의 제한과 노동력사용의 절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안』을 마련함(노동부).

고용보험법안

- ①실업예방·고용구조의 개선·직업능력개발 등의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②고용보험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60세이상이거나 시간제 근로자·공무원·교원과 자발적인 실직자, 직업지도훈련 및 직업소개를 거부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③근로자는 임금총액의 2%이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되, 실직전 18개월동안 12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④실업급여는 구직자급여와 취직촉진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실업급여액은 실직 30일이후부터 실직전 임금의 50%수준에서 14일에 한번씩 본인이 직업안정소에서 수령하도록 하며, ⑤피보험기간

은 실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60일에서 2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안』을 마련함(노동부).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안

- ①전문적 지식·기술·경험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하는 업무와 특별한 고용관리가 필요없는 청소·건물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허가하도록 하고, ②임금 및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되, 안전보건상의 사업주책임은 사용자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을 마련함(노동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 ①국내 인력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에 설치된 직업안정소의 취업지도관들이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②민간기업의 근로자모집에 대하여 노동부가 필요에 따라서는 모집시기·인원·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③허위구인광고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함(노동부).

(2) 고용관련법안에 대한 입법의견

- ①『고용보험법안』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명문화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10인이상의 사업장으로 명문화해야 하고, ②『근로자파견사업의규제및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안』의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을 허용하려는 것은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이 형성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시기상조이며, ③『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소를 폐지한 것은 타당함(조한천 한국노총 노동정책실장, 노동부 주최 「고용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1993.8.3)」).
-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관련법안의 경우, ①서비스업 등의 근로자 모집제한 여부는 반드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며, 민간기업의

근로자모집을 제한하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삭제되어야 하고, ②고용보험의 경우는 150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해야 하며, ③실업급여의 수준은 통상임금의 50%로 조정하여야 함(김영배 경총이사, 노동부 주최 「고용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1993.8.3)」).

-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안정성장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에 대한 적극적 개념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노동부의 『고용보험법안』은 거의 국가부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가 과연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시비를 빚을 우려가 있고, 『근로자파견법』도 현실적으로 인력공급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필요하지만 법이 까다로울 경우에는 법테두리 밖의 인력공급사업이 의외로 횡행할 수 있으므로 재조정이 필요함(박래영 홍익대 교수, 노동부 주최 「고용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1993.8.3)」).
- 고용관련법의 제정·개정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법이 선언적 의미만을 가져서는 안되므로 법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하여 벌칙규정을 보다 강화하여야 함(김문수 구로노동인권회관 소장, 노동부 주최 「고용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1993.8.3)」).
- ①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발생한 실직자를 성장산업으로 이동시키려는 정부의 「고용정책기본법」의 제정목적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정부가 노동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극단적인 복지국가에서 실시되는 정책이므로 우리 여건상으로는 시기상조이고, ②동 법률안은 성별·신앙·사회적 신분·출신지·출신학과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시에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 합의 등에 의해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함(대한상공회의소, 「고용관련법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서(1993.8.9)」).
- 고용관련법의 제·개정에 있어서는 ①명분보다 현실을 중시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현실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②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은 사업주나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③직업선택의 자유와 기업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간섭은 최소화하여야 함(국민일보 사설).

-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관련법안의 경우, 일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취업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재고되어야 함(세계일보 사설).
-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관련법 제·개정작업중에서 (1)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이 제도화되면 ①파견노동자의 저임금고착과 중간착취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②근로자의 파견을 통하여 고용관계의 불안정은 확대·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③파견근로의 확대에 의해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하고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2) 고용정책기본법의 경우, 고용정책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시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3) 고용보험법의 경우, 적용범위·실업급여수준·수요재원조달과 운영관리 등이 내실있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고, (4) 직업안정법의 경우, 노동력 수요공급의 적절한 조절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고되어야 함(한겨레신문 사설).

: 경향 93.7.16.,2면; 경향 93.7.30.,22면; 동아 93.7.30.,29면; 동아 93.7.30.,31면; 서울 93.7.30.,21면; 한국 93.7.30.,2면; 조선 93.7.30.,2면; 조선 93.7.30.,6면; 중앙 93.7.30.,1면; 국민 93.7.31.,3면; 세계 93.7.31.,3면; 한겨레 93.8.3.,2면; 경향 93.8.3.,22면; 국민 93.8.4.,17면; 동아 93.8.4.,4면; 동아 93.8.4.,23면; 중앙 93.8.4.,22면; 한겨레 93.8.4.,12면; 중앙 93.8.6.,22면; 국민 93.8.7.,2면; 경향 93.8.10.,7면; 동아 93.8.10.,10면; 조선 93.8.10.,1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76면)·제9호(96면) 참조

◎ 산업·경제

○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에 관한 입법의견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개정에 대하여 민자당이 개선안을 제출하자 정부(재무부·국세청)는 조세행정의 혼란과 부동산투기현상의 재발위험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에 민주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은

존치하되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근간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이후 민자당과 정부는 수차의 당정협의를 거쳐 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자영목장·현지인 소유의 임야·종중소유의 임야의 경우, 과세유예기간을 현행 '편입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②읍·면지역에서 현지인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현행법상 영림계획에 의하여 조림중인 임야와 상속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하던 것을 '89년 이전부터 현지인이 소유한 임야는 모두 비과세하도록 하며, ③종중소유농지의 경우, 종중원이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하는 경우에만 비과세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나면 과세하던 것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지 않으면 임대농지도 비과세하며 과세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④6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80평이상이면 초과분에 과세하던 것을 2백평까지는 모두 비과세하도록 하며, ⑤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90년말 이전부터 부부·부자간에 토지·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만 비과세하던 것을 '89년말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토지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⑥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하던 것을 재산세를 내고 있거나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올라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무허가공장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비과세하도록 하며, ⑦자투리땅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행정예고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의 경우에도 3년간 비과세하도록 하고, ⑧공시지가관련 민원의 경우, 지가재조사 청구기한을 현행 7월 21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30일간 연장하면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 인근토지와 비교해 지가가 불균등하거나 당초 지가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당정회의).

- 농민과 중소도시서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①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 건축이 규제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②주택부속토지의 최저한도(현재 80평, 특별시·직할시는 60평)를 농촌지역은 2백여평으로, 특별시·직할시는 120평 정도 상향

조정하며, ③건물을 지을 수 없는 일정면적이하의 토지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축산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④농민이 법도입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임야는 조림계획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민자당).

- 과표현실화가 이루어질 1997년경에는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토초세를 이에 흡수하여 완전히 폐지하거나 법자체는 존치시키되 평상시에는 시행을 유보하고 지가가 급변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함(나오연, 민자당 의원).
- 민자당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정방향에 따르면 현재 시행단계에 있는 토초세법 및 시행령과 관련한 조세행정에 심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현상을 다시 발생시킬 위험이 크고, 토초세의 운영과정에서 공시지가의 산정과 유희토지판정과 관련하여 일부 잘못된 점은 사실이나 이는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법의 개정보다는 운영상 합리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재무부).
- 현행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법과 시행령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한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과표를 현실화해야 하고,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토초세시행령 개정방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유희토지개념을 축소할 경우에는 토초세 자체가 유명무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①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②선의의 토지보유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③땅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중과세하고, ④서울의 일부지역과 주요도시의 노른자위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재산정하면서 토초세의 면세자·비과세자를 철저히 재조사하며, 토지투기자의 토초세 포탈행위를 차단하고, ⑤일부 고액토초세 납세예정자들이 소액납세자들의 불만을 충돌하거나 로비로 토초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김병오, 민주당 정책위의장).

- 토초세가 1991년부터 부분적으로 예정과세된 뒤 전국의 부동산값이 1991년의 평균 1.5%에서 1992년에 3%정도 떨어지는 등 땅값안정에 크게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토초세는 폐지하지 않을 것임(엄낙용 재무부세제심의관, 경실련 주최 「토초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1993.7.28)).
- 토초세의 조세저항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부채지주에 대해서는 토초세면제가 불가능하고, 자경농민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을 8km이내 거주자에서 20km이내 거주자로 대폭 확대했지만 조세저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 부분을 손질할 계획임(조우현 건설부 토지국장, 경실련 주최 「토초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1993.7.28)).
- 민자당과 정부가 토초세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심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최대한 줄이면서 법률체계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재무부의 의견이 더욱 타당한 방향이라 생각함(한국일보 사설).
- 토초세가 교회설립을 위한 부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난립방지의 목적으로 설립한 유지재단의 토지를 합산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오히려 재정능력이 부족한 교회재산에 대하여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동법은 폐지되어야 함(한국교회문제대책협의회).

: 국민 93.7.20.,21면; 한겨레 93.7.20.,7면; 동아 93.7.21.,5면; 한겨레 93.7.21.,2면; 한국 93.7.21.,23면; 조선 93.7.22.,15면; 중앙 93.7.23.,23면; 경향 93.7.24.,4면; 서울 93.7.24.,1면·4면; 세계 93.7.24.,6면; 조선 93.7.24.,1면; 한겨레 93.7.24.,1면; 동아 93.7.25.,7면; 서울 93.7.25.,1면; 한국 93.7.25.,1면; 한국 93.7.25.,3면; 국민 93.7.26.,7면; 서울 93.7.25.,3면; 국민 93.7.28.,7면; 서울 93.7.28.,4면; 중앙 93.7.28.,3면; 동아 93.7.29.,4면; 서울 93.7.29.,3면; 중앙 93.7.29.,2면; 세계 93.7.29.,3면; 세계 93.7.29.,6면; 조선 93.7.29.,5면; 서울 93.7.30.,23면; 중앙 93.7.30.,5면; 경향 93.7.31.,1면; 국민 93.7.31.,1면·3면; 서울 93.7.31.,1면·

4면; 경향 93.8.1.,7면; 동아 93.8.1.,3면·7면; 서울 93.8.1.,3면;
세계 93.8.1.,1면; 세계 93.8.1.,1면·2면; 국민 93.8.2.,7면·
24면; 중앙 93.8.2.,1면·3면; 국민 93.8.3.,1면; 한겨레 93.8.4.,
2면; 조선 93.8.5.,7면; 동아 93.8.8.7면; 조선 93.8.8.,7면; 한국
93.8.8.,6면

○ 외자도입법 개정안

- 외국인투자절차의 간소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
화하기 위하여 ①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증액 등 비교적 소규모의 증
액투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없이 곧바로 허가해 주도록 하고,
②현재 20~30일 소요되는 외국인 투자·기술도입신고업무의 처리기
간을 10일로 단축하며, ③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업종을 추가할 경우에
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자도입법개정안』을 마련함
(재무부).

: 세계 93.7.15.,7면; 한겨레 93.7.15.,7면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

- 우리사주의 처분제한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①우리사주를 취득한지 7년
이 지난 종업원들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②결혼이나 주택구입 등의 부
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의결함(국무회의).

: 서울 93.7.16.,3면

○ 국채법 개정안

- 금리자유화 및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하고,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①현재 7개의 기금 등에서 각각 발행하고 있는
국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에서 국민
주택채권(1·2종)·공공용지보상채권·국민투자채권을 제외한 재정
증권·외평증권·양곡기금증권·농어촌발전채권·농지채권·국민주
택기금채권·군용시설채권 등의 발행과 상환을 종합·관리하도록 하
며, ②한국은행·농협·주택은행 등에서 다루고 있는 국채발행·상환
에 대한 사무처리업무를 한국은행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채

법개정안』을 마련함(재무부).

: 세계 93.7.22.,6면; 한겨레 93.7.22.,7면

○ 상품권법 개정안

- ①소비자보호차원에서 발행자가 상품권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할 수 없도록 최저 유효기간을 발행일로 부터 1년으로 하고, ②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비율(80%정도)이상을 사용한 후, 차액의 환불을 요구하면 발행자는 차액을 환불하도록 의무화하며, ③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일정비율 상당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④상품권 발행업체의 부도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현행의 공탁제도(발행잔액의 50%)이외에 금융기관의 채권지급보증이나 보증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품권법개정안』을 마련함(재무부).

: 서울 93.7.16.,9면; 세계 93.7.16.,8면; 한국 93.7.16.,8면; 한겨레 93.7.16.,6면; 경향 93.7.16.,7면; 한겨레 93.7.21.,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0호 제1편 참조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의견

- 금융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①한국·대한·국민 등 서울소재 3개 투신사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현행 5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하도록 하여 대형화를 유도하고, ②임직원에 대한 자사 수익증권 취득금지조치를 완화하며, ③해외투자신탁업무의 활성화와 투자신탁업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외 투신사의 상호진출 근거를 명시하고, ④신탁약관의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⑤투자신탁 수익자의 보호를 위해 위탁회사의 해산·업무허가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수익자가 직접 수탁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고자 함(재무부).

: 세계 93.7.27.,6면

○ 금융기관의 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금융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①합병과 업종전환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현행 4개에

서 7개로 확대하며, ②보험사의 경우, 자율적으로 합병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시에는 조세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고, ③상장·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비상장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법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④신설 및 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등록세·소멸금융기관에 대한 청산소득세·소멸금융기관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 등은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재무부).

: 중앙 93.8.10., 8면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의견(영장없는 예금계좌추적의 적법성 여부)

- 국법에 의해 최고회계감시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감사원은 피감기관은 물론 그외의 대상에 대하여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기관인 재무부장관이나 은행감독원장은 감사원의 자료요구에 응해야 하고, 또한 사회방위라는 공공의 가치는 예금계좌의 비밀보호가치보다 우선하므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금비밀보호조항과는 저촉되지 않는데, 필요하다면 예금계좌추적과 관련한 불법·위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감사원법』을 개정하고자 함(감사원).
- 각급 사정기관이 경쟁적으로 예금계좌추적을 남용하여 예금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인하여 법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므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단서조항(법원의 제출명령·세무조사·금융기관내의 정보제공·재무부장관 등의 정보제공 등)이외에 예금계좌에 대해 영장없이 임의로 추적하는 사정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함(검찰).
- 새정부의 출범이후, 은행감독원에는 구두 또는 기관장명의로의 협조공문에 의한 외부기관의 자금추적요청이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적법성시비가 일고 있는 만큼 법규정이 정비될 때까지는 현행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장없는 자금추적요청에는

응하지 않도록 함(은행감독원).

: 중앙 93.7.24.,3면; 경향 93.7.25.,1면; 동아 93.7.25.,1면; 국민 93.7.26.,3면; 동아 93.7.26.,3면; 동아 93.7.27.,11면; 서울 93.7.27.,2면; 서울 93.7.27.,5면; 한겨레 93.7.27.,2면; 국민 93.8.9.,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0면) 참조

◎ 농림·수산

○ 낙농진흥법 개정의견

- 원유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고, 원유의 과다생산·과부족현상 등을 막기 위하여 원유가결정 및 수급조절업무를 낙농관계 민간전문기구인 「낙농진흥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낙농진흥법』을 개정하고자 함(농림수산부).

: 중앙 93.7.21.,2면

○ 농지기본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농지거래 제한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①현행법상 농지구입을 위해 구입희망자가 대상농촌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요건」과 구입대상농지로 부터 20km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통작거리제한규정」을 폐지하고, ②생산자단체 및 농기계회사가 연구목적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농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자 함(당정회의).

: 한겨레 93.8.5.,2면; 한국 93.8.5.,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3면) 참조

◎ 건 설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토지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지가가 상승하고 개발사업계획실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②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나 택지개발예정지와 아파트지구·공원지역

으로 묶여진 토지거래허가지역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거래를 허가하며, ③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년내에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④국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매절차」의 절충기간을 명확히 하며, ⑤토지거래 허가관청이 개인으로 부터 토지거래허가서를 접수받은 후, 해당토지가 공공시설건설용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동안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국가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건설부).

: 세계 93.7.25.,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07~108면) 참조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안

- ①서울·의정부·인천·수원일대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기존공장면적의 2배, 최대 3,000m²까지 1회에 한하여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②농업진흥지역 내의 공장증설도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3,000m²이내 1회에 한하여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안』을 마련함(상공자원부).

: 동아 93.7.17., 7면; 조선 93.7.17.,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90~91면·116면) 참조

○ 국유재산법 개정안

- 유희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유지매각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유희국유지를 국가소유로 존속시키되 20년동안(경신가능)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②국유재산매각대금의 경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로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③국유재산 사용료의 경우, 1년에 1회 납부하던 현행 규정을 1년에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④국유지무단점유자의 변상금의 경우, 2년 범위내에서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⑤주인이 없는 토지

를 국유지로 동기할 경우, 관공서의 동기촉탁서(신청서)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⑥해방이전에 북한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남한지역내의 토지는 회사동기부 없이도 국가가 이를 취득하여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마련함(재무부).

: 한겨레 93.7.14., 7면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①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경우, 현행 개발면적 1,000평이상(도시계획구역은 500평이상)에서 6대도시의 경우는 200평이상으로, 6대도시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의 경우는 300평이상으로,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은 500평이상으로 확대하고, ②주택조합이나 도심지재개발조합과 같이 조합형태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③용도지역·지구가 변경된 후에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종전의 사업착수시점에서 토지취득시점으로 하고, ④이원화되어 있는 지가산정방식을 공시지가로 통일하며, ⑤개발사업을 별이지 않고 건축행위만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중앙 93.8.5., 9면; 서울 93.8.6., 3면; 한국 93.8.6.,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8호(103면) 참조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서울시내에 건축되는 연건물면적 3,000m²이상의 업무·판매용 건물에 대하여는 대지가(개별공시지가)와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건설부).

: 서울 93.7.16., 8면; 한겨레 93.7.16., 12면; 세계 93.7.29., 7면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 건축허가절차를 완화하고, 녹지지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바닥면적 50m²이내의 건축물을 증축·개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만 신고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 규모이하의 건축물을 신

축할 때에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②녹지지역안에서 건립되는 모든 건축물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적용하여 100평부지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단층면적을 40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며, ③국도변으로 부터 100m밖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²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50m로 단축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서울 93.7.25.,2면; 중앙 93.7.29.,2면; 세계 93.8.3.,7면

◎ 과학기술 · 교통 · 체신

○ 자동차관리법 개정의견

- 불합리한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위하여 자동차 소유주가 폐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던 것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행정쇄신위원회).

: 세계 93.7.17.,2면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 항공기와 인공위성 등의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항공우주산업육성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②항공우주산업육성기금을 국내개발 및 국제공동개발, 항공우주핵심기술개발, 생산 및 시험설비구입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안』을 마련함(상공자원부).

: 중앙 93.7.12.,9면; 한겨레 93.7.13.,2면

○ 위성방송안

- ①위성방송국과 종합유선방송국 및 일간신문,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고,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이 겸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위성방송국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이상 초과소유할 수 없으며, ③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특정이념이나 사상을 지지 · 옹호하는 정당 · 종교단체는 어떤 경우에도 위성

방송국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④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이나 출자를 받을 수 없으며, ⑤위성방송국의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⑥허가변경이나 재허가·심사권·지구국설비허용권도 공보처장관이 가지며, 허가과정심사에서 사안에 따라 체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⑦허가유효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⑧위성방송국의 재원은 광고와 유료방송으로 충당하되, 광고방송때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거나 구분하도록 하고, ⑨프로그램 편성은 종합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프로그램이 일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비율을 정하며, 외주제작·편성의 경우도 일정한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성방송법안』을 마련함(공보처).

: 서울 93.7.20., 2면; 조선 93.7.24., 14면; 국민 93.7.26., 1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6~107면) 참조

○ 도로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도로운행을 금지하되, 차량구조상 여러개의 바퀴축으로 하중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48톤까지 간단한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총중량이 48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중계산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통과교량 등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판단한 후에 운행을 허가하도록 하며, ③40톤초과의 대형차량의 경우에는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④과적도주차량에 대하여는 운전자와 차주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건설부).

: 경향 93.7.27., 7면; 한국 93.7.27., 9면

◎ 환경·보건

○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입법의견

- 최근의 한·약분쟁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라 시비를 가리기

는 어렵지만 현행 약사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약사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양의약은 양의약끼리, 한의약은 한의약끼리 분업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김진규, 국민일보 논설위원실장).

- 의학체계가 다른 한약품을 약사가 취급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부당하므로 개정되어야 함(대한한의사회,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2차회의 (1993.7.13)).
- 한의학은 그 자체의 과학화가 부족하므로 현실상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대한약사회,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 2차회의 (1993.7.13)).
-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약사들이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의사들이 동물약품판매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함(대한수의사회).
- 수의사의 동물약품판매가 가능해지면 치과의사도 치과관련 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의사계의 요구는 의사와 약사를 구분하고 있는 현 의학체도를 뿌리채 흔드는 불합리한 주장임(대한약사회).

: 국민 93.7.13.,5면; 서울 93.7.13.,3면; 서울 93.7.14.,3면; 경향 93.7.15.,22면; 동아 93.7.23.,30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98면) · 제8호(117~118면) · 제9호(108~109면) 참조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및 개정의견

- 국민생활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에어컨·냉장고·세탁기·진공청소기 등의 가전제품, 불도저·굴삭기·공기압축기 등의 건설기계장비, 가정용 보일러·송풍기 등의 기계류에는 소음표시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②불도저·굴삭기·공기압축기 등의 건설기계장비는 소음기준에 맞는 제품만을 제작·수입·시판할 수 있도록 하며, ③학교·병원·주택주변에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발생시설물(도로·철도·공항)의 건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함(환경처).
- ①자동차생산의 경우, 현행법상 소음발생허용기준에 따라 제작차에 환

경처장관의 인증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당국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데,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소음·진동규제법개정안』이 소음표시부착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중으로 행정규제를 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②건설업계의 경우, 현행법은 소음·진동규제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 방음벽·흡음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면서 환경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데, 건설사업장의 소음·진동규제기준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비를 공사발주관서에서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야 함(대한상공회의소).

: 중앙 93.7.13.,22면; 경향 93.7.14.,1면; 한국 93.8.7.,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9호(107~108면) 참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안

- ①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지역을 현행 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②현행법상의 시설물의 용도분류체계를 단순화시키며, ③고액납부자에 한하여 환경개선비용을 3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환경처).

: 경향 93.8.1.,2면; 경향 93.8.8.,23면

○ 한국자원재생공사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①재활용품의 수집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도록 하고, ②폐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위한 국가사업은 자원재생공사가 전담하며, ③자원재생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서 비축기지나 재활용시설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차입과 채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법(가칭)』을 제정하고자 함(환경처).

: 한국 93.8.10.,29면

○ 토양환경보전법(가칭)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①모든 신규농약의 제조에 대하여는 사전에 토양·수질오염도 등의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②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은 농약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보사부 등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제조·유통을 일체 금지시키도록 하며, ③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농약의 항공방제를 금지시키면서 농경지방류수의 농약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약사용의 자제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가칭)』을 제정하고자 함(환경처).

: 세계 93.7.16.,21면: 중앙 93.7.16.,22면

◎ 법원·법무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안

- 부동산중개사고의 구제를 위한 공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②피해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서울 93.7.28.,8면

○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 ①사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사법제도심의연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②「사법제도심의연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관·변호사·대학교수 등의 9~13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자 함(대법원).

: 서울 93.7.17.,22면

○ 법무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의견

- 미국의 법무보험은 ①변호사비용을 절감시켜 국민 누구나가 쉽게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②법률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권익구제에 일조를 하였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노동자·도시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예처럼 법무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함(오수근, 인하대 교수)

: 한겨레 93.8.5.,9면

Ⅱ. 최신법령 목록

(1993. 7. 11 ~ 1993. 8. 1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법 률 4569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3.8. 5
4570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1993.8. 5
4571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	1993.8. 5
4572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1993.8. 5
4573	해외건설촉진법개정법률	1993.8. 5
457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1993.8. 5
4575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	1993.8. 5
4576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	1993.8. 5
4577	철도소운송업법중개정법률	1993.8. 5
4578	삭도·레도사업법중개정법률	1993.8. 5
4579	우편환법개정법률	1993.8. 5
4580	광주과학기술원법	1993.8. 5
조 약 1181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특허출원된국 방관련발명의비밀보호에관한협정	1993.7.24
1182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 관한협정	1993.7.24
1183	대한민국정부와몽골정부간의대몽골대외경제협 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1993.7.16
1184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우편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	1993.8. 9
대통령령13926	민주이념발전위원회규정등폐지령	1993.7.12
13927	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정령	1993.7.12
13928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1993.7.13
13929	계량법시행령개정령	1993.7.13
13930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1993.7.13
13931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3.7.16
13932	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3.7.16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13933	21세기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3.7.21
1393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	1993.7.21
13935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3.7.23
13936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7.26
13937	개항지정령중개정령	1993.7.26
13938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	1993.7.26
13939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93.7.26
13940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	1993.7.28
13941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3.7.28
13942	통계법시행령중개정령	1993.7.31
13943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중개정령	1993.7.31
13944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당면등의관세율변 경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3.7.31
13945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 한규정중개정령	1993.7.31
13946	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1993.8. 4
1394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3.8. 4
1394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령	1993.8. 4
13949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1993.8. 7
13950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1993.8. 7
13951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1993.8. 9
13952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1993.8. 9
13953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1993.8. 9
13954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3.8. 9
13955	교육개혁위원회규정	1993.8.10
총 리 령 423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개정령	1993.7.12
424	정부주요정책의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3.7.23
425	공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중개정령	1993.7.26
426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31
427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31
428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31
42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3.7.3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외무부령 170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1993.7.28
내무부령 589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20
재무부령 1939	전산조사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중개정령	1993.7.19
1940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20
1941	국제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7.24
1942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28
1943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28
국방부령 43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16
438	병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29
교육부령 636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8. 3
637	학교급식법시행규칙	1993.8.10
문화체육부령 5	경륜·경정법시행규칙	1993.7.16
6	학교급식법시행규칙폐지령	1993.8.10
농림수산부령 1124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8. 3
상공자원부령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15
11	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24
12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30
13	계량법시행규칙개정령	1993.8. 6
건설부령 532	홍수위보고및홍수주의보·경보발령등에관한 규칙중개정령	1993.7.16
53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7.20
53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8.10
보건사회부령 912	위생분야중사자들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1993.7.27
교통부령 1007	국제공항에서의귀빈예우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7.24
1008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27
1009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중 개정령	1993.7.28
1010	선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31
체신부령 858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중개정령	1993.7.24
859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30
860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7.30

국내입법의견조사(상품권의 법적 규제)

제 10 호

1993年 8月 25日 印刷

1993年 8月 31日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株) 韓國 컴퓨터 産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2,500원

국내입법의견조사 발간목록

호 수	도 서 명	면 수	발 행 일
제 1 호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	72면	92. 7.29
제 2 호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68면	92. 8.31
제 3 호	환경문제 관련 입법의견	88면	92.10.29
제 4 호	성직자 과세논쟁	54면	92.11.30
제 5 호	남북통일을 위한 대처방안과 법적문제	74면	92.12.30
제 6 호	선물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120면	93. 3.25
제 7 호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80면	93. 4.30
제 8 호	농지제도의 법적 정비	130면	93. 6.30
제 9 호	정치관계법제의 개선방향	118면	93. 8.20
제10호	상품권의 법적 규제	112면	93. 8.31
제11호	묘지제도의 법적 정비	근	간

- 안 내 -

「국내입법의견자료회원」에 가입하시는 분에게는 현안쟁점에 관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을 수집·정리 및 분석한 「국내입법의견조사」보고서를 제
 공합니다.

- 연간회비 : 10,600원
- 가입방법 : 은행 온라인 계좌 이용 회비불입
 국민은행 계좌번호 009-25-0002-616
 예 금 주 한국법제연구원
- 연락처 Tel 722-2901~5
 FAX 722-2900